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2.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9
2. 안전사고	11
① 대학 안전사고	11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3
③ 연구실사고	15
3. 감염병 확산	17
① 호흡기감염병	17
4. 범죄	19
① 일반범죄	19
② 성범죄	2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3
① 산업재해	23
② 중대재해	29
6. 사이버	35
① 사이버위기	35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36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36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36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37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38

목 차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39
1. 재난안전훈련	39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41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43
4. 연구실 안전교육	44
5. 감염병 예방교육	46
6. 성범죄 예방교육	47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8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8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50
VI. 위험요인별 대응 매뉴얼	52
1. 풍수해	52
2. 지진	54
3. 화재	57
4. 실험실	58
5. 감염병	59
6. 식중독	65
7. 범 죄	69
8. 성희롱·성폭력	72
9. 사이버	74
[붙임1]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90
[붙임2]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92
[붙임3]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93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사이버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정보보안 관리지침」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총장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총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설립 구분	국립	
주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전화	054-478-7001	FAX	054-478-7010	홈페이지	www.kumoh.ac.kr
총장	곽호상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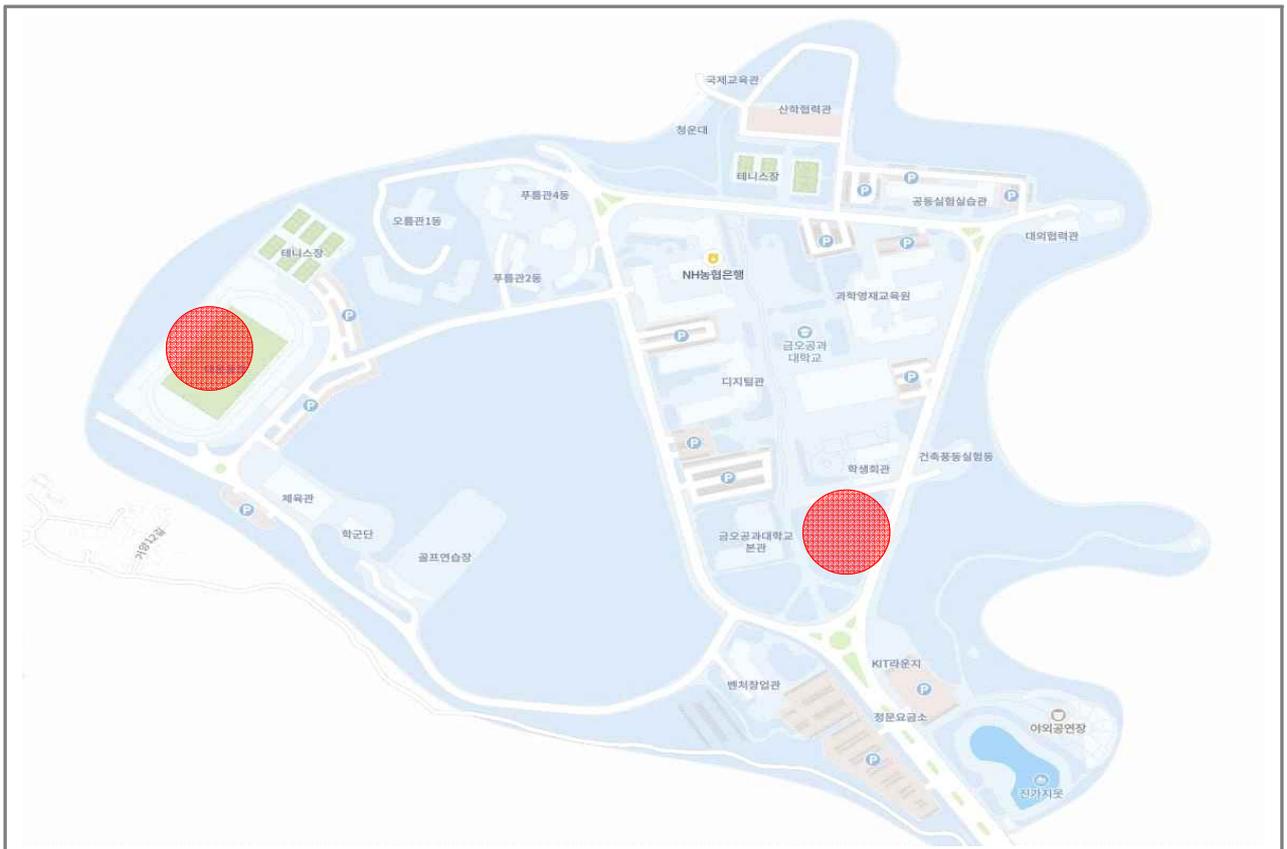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교직원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일반직	기술직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일용직	합계
	232	242	52	37	185	39	1	788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4,994	423	78	17	5,495	재학생기준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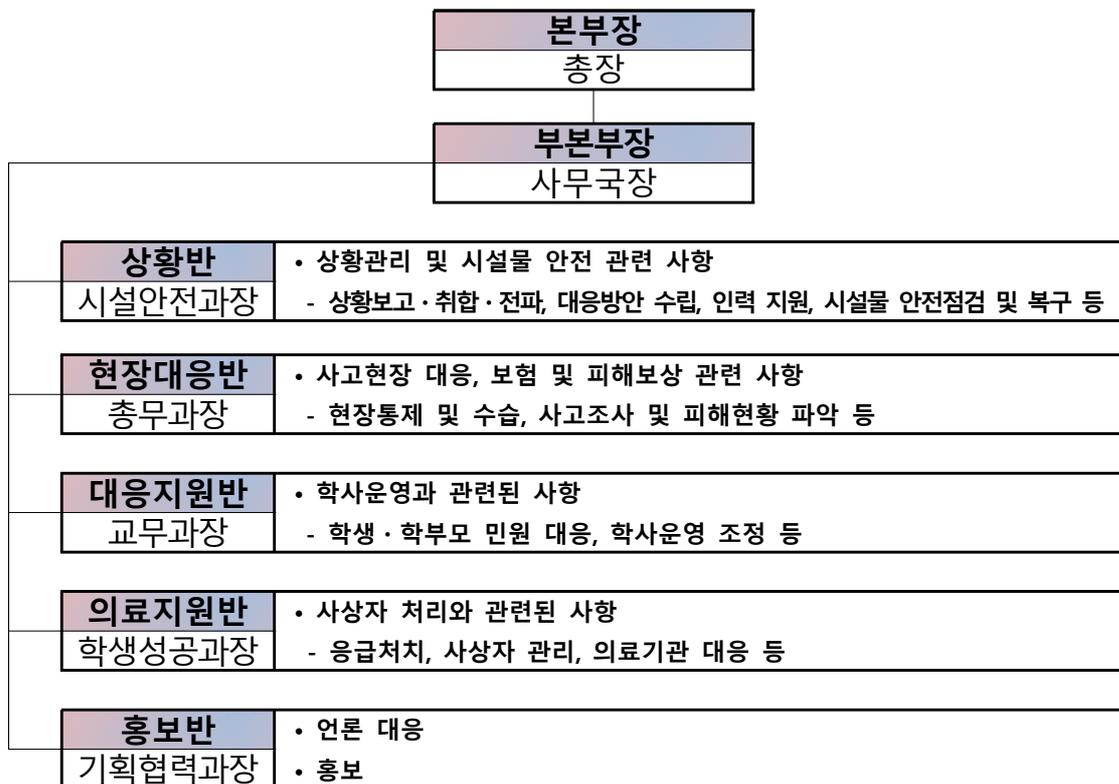


2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비고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안전과	
1. 재난	자연재난	시설안전과	
	사회재난	시설안전과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성공과	
	연구실 사고	시설안전과	
	교육시설안전	시설안전과	
3. 감염병	호흡기감염병(독감, 코로나19 등)	학생성공과	
4. 범죄	성범죄	학생성공과	
	일반범죄	학생성공과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시설안전과	
6. 사이버	사이버위기(사이버테러 등)	정보전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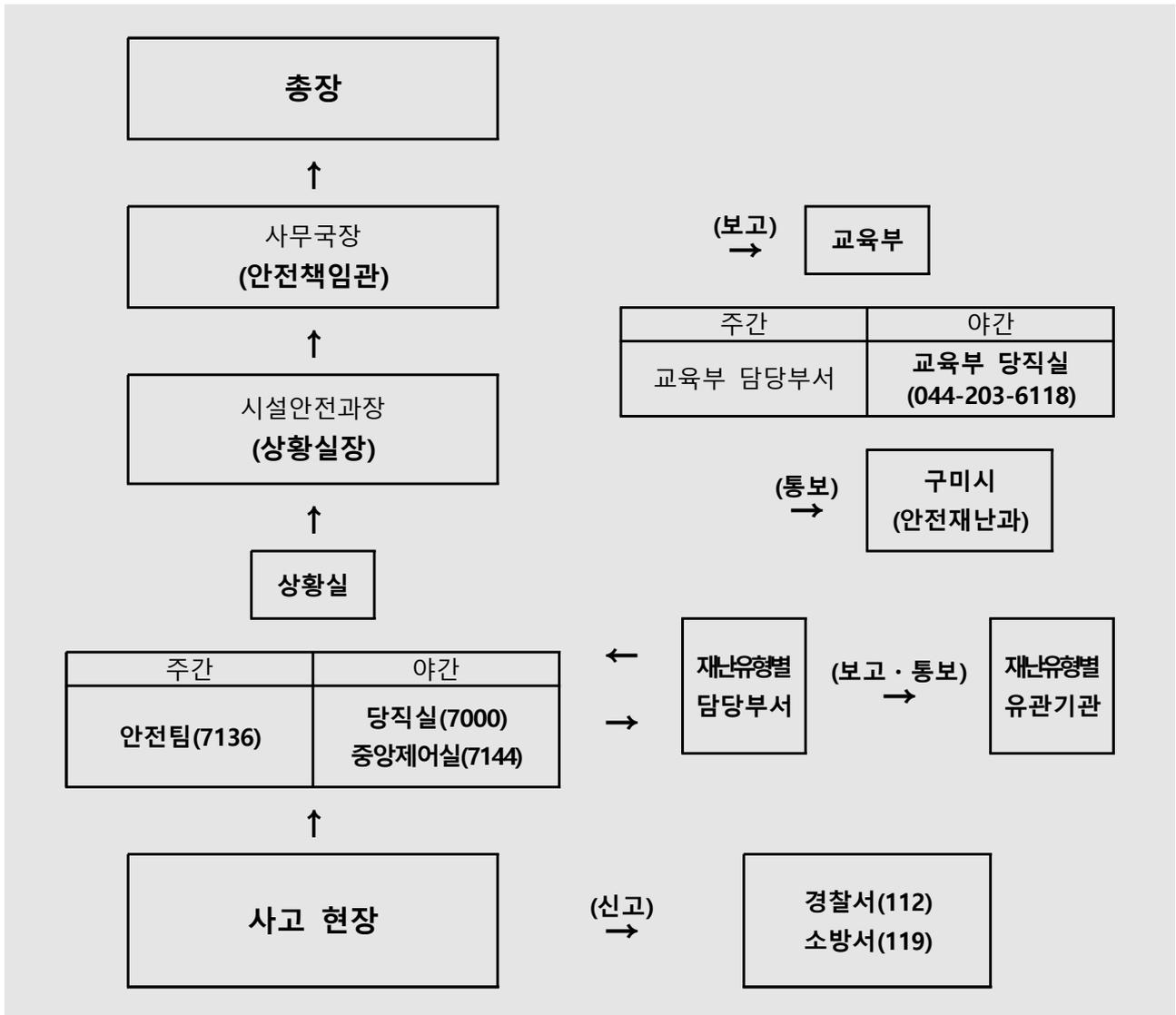
□ 재난안전관리 대응조직



- 심각 단계의 재난 발생하여 담당부서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 편성·운영
 - 심각 단계 외에는 사고관련 담당부서에서 자체 대응
- 감염병, 식중독, 사이버, 학생안전 사고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별도 편성·운영

※ 산학협력단 포함

□ 상황관리 체계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협조부서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과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각종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폭염,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
-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전대비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안전 체험시설 방문교육
 - (목적) 재난상황 가상체험 및 교육을 통한 안원의식 및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
 - (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 및 대학(원)생
 - (장소)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 (일정) 년 2회(5월, 11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목적)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대상) 교직원 및 대학(원)생
 - (장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일정) 년 1회(5월)
- 시설물 안전점검
 - (목적)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취약시설 및 학내 시설물에 대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 (구성) 민간전문가, 시설안전과(건축·토목·전기·기계) 6개조
 - (내용) 시설물·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육안점검
 - (일정) 정기 3회, 특별 1회

구분	점검명	대상	비고
정기	해빙기,여름철,겨울철	학내 모든 건축물 및 부대시설	3,6,11월
특별	재해취약시설 점검	옹벽, 생활관, 체육관, 공사현장 등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1회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목적) 대학 구성원 모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홍보
- (내용) 시기별 안전관리 중점사항 선정,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 배부를 통해 구성원 자발적 안전상황을 점검하도록 유도
- (일정) 매월4일(3,6,11월 제외)

○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 재난대비 온라인 콘텐츠 업데이트
- 태풍, 호우, 대설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VI. 위험요인별 대응매뉴얼 참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내진 및 벽돌보강	-	-	-	-	
건물옥상방수	10	10	80	100	
노후포장개선	-	400	-	400	
노후 승강기 교체	-	300	900	1,200	
시설보수	30	50	50	130	
계	10	710	1,030	1,75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종	054-478-7148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정택	054-478-7138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이상헌	054-478-7093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건)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실험실 기자재 및 안전장비의 확대 보급, 개별 냉난방기의 무분별한 사용 등 부주의 또는 전기적 화재 요인 증가 및 시설 노후에 따른 건물파손 피해 우려

※ 사고예시 : 화학물질 및 가스 폭발, 실험기기 및 냉난방기로 인한 누전합선, 파손 건축자재 낙하 등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정기적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시설 보완(열감지기⇒연기감지기), 안전점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금오역량아카데미 연계)
 - 연구실 등 냉·난방기 화재 안전점검 실시
 -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단열 마감재를 불연단열재로 교체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진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비내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지속적인 내진보강 추진
 - 20년이상 노후된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 구조보강 조치
 - 교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해체·철거 작업 추진
-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신속한 전파로 초미세먼지 저감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 화재폭발, 건물붕괴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VI. 위험요인별 대응매뉴얼 참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소방시설 점검	28	28	42	98	
드라이비트 제거사업	607	-	-	607	
시설보수사업	40	50	50	140	
석면해체	903	900	-	1,803	
계	1,578	978	92	2,648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임기덕	054-478-7040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협조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학교 자체 조사 결과
 - 학생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학부(과)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 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대학안전사고

관 리 지 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정택	054-478-7138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안전인증 및 점검	40	30	28	98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위험요인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13개 사고유형] 화학(누출접촉, 화재폭발), 가스(가연성폭발, 독성누출), 전기(감전, 화재), 생물(유출, 부상, 생물안전작업대 사고), 기계(끼임절단),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 우리 대학 연구실에도 최근 연구활동종사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항상 세심한 안전관리 필요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건)	-	1	2	1	-	0.8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명)	사망(실종)	-	-	-	-	-
	부상	-	1	2	1	0.8
	계	-	1	2	1	0.8

□ 원인분석

- 소속 연구원의 잦은 변동으로 실험기기·안전장비·개인보호구 등 관리 부실, 정리 정돈 부실 등 전반적인 안전환경 조성 미비
- 제한된 연구기회로 실험자(학생)의 실험경험 및 안전지식 부족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예방)** 안전장비 보급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연구실 위험요인 및 안전환경 개선
 - 2023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619백만원)을 통한 **안전장비 보급**
 -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연중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학기별 집합·온라인 **안전교육**(연 2회)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신입생 교육 강화(2H->6H)**
 - 유해인자를 상시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건강검진** 실시(5월, 11월)
 -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4월) 및 보상한도 상향조정(사망·장애 5억)
-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연구실 안전사고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VI. 위험요인별 대응매뉴얼 참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141	619	200	960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13	13	13	39	
안전교육 동영상 콘텐츠	8	8	8	24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공제	23	23	23	69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23	23	23	69	
연구실 안전용품 구입(산단)	147	150	150	447	
합 계	355	836	417	1,608	

※ 호흡기질환 유행할때에는 수업 운영 단계를 A, B, C 단계로 구분하며 수업 방식은 대면, 원격병행,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며, 상황 악화 시 일상회복지원단에서 수업 단계를 C단계로 격상하면 모든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is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대학일상회복지원단)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우리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 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VI. 위험요인별 대응매뉴얼 참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대학혁신사업비 (코로나19등 호흡기 감염병포함)	67	0	0	67	필요시 예산확보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임기덕	054-478-7040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협조부서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상담센터)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처	주무관	이서현	054-478-7911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협조부서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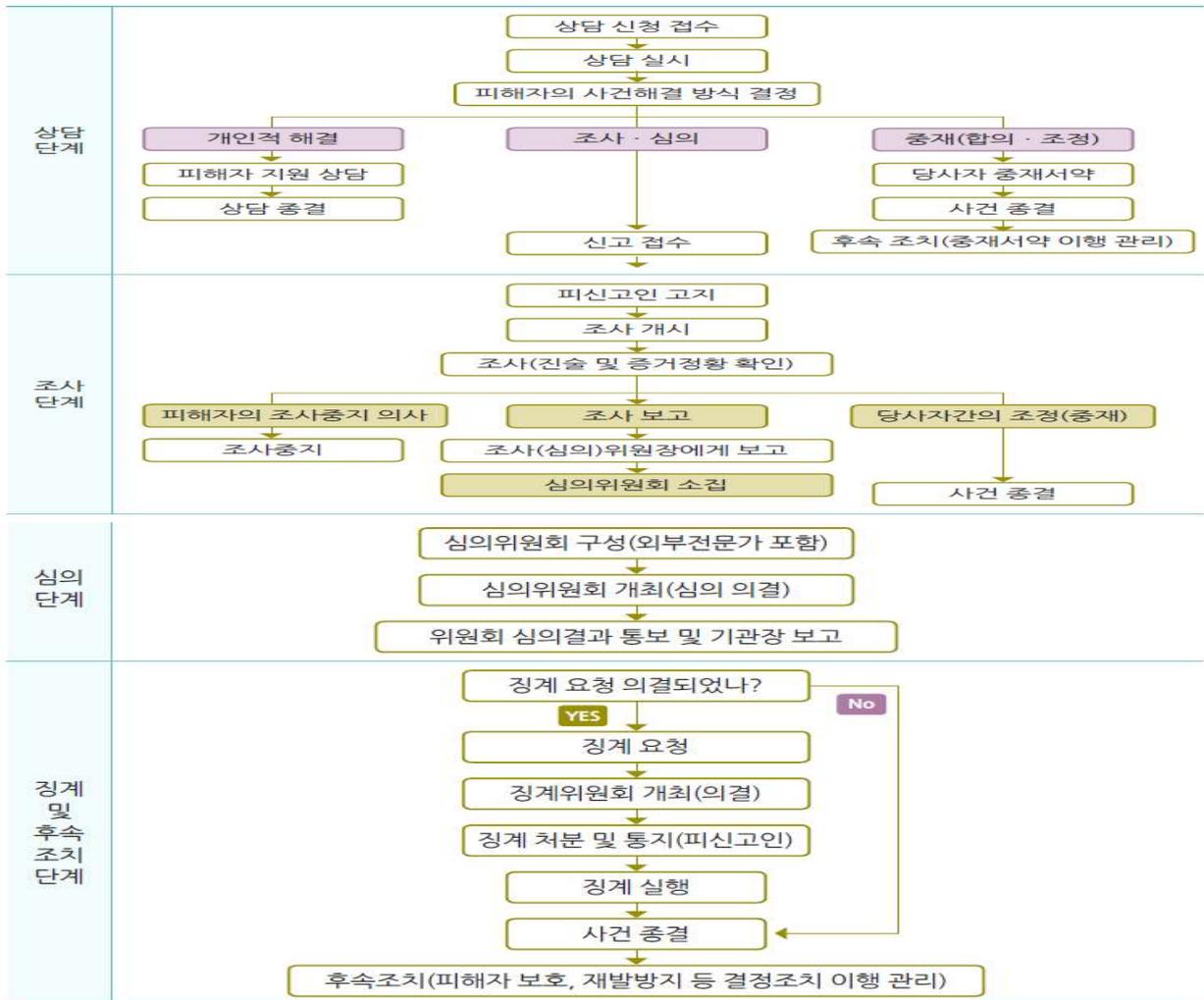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0	1	0	0	0.4
	성폭력	2	0	3	2	1	1.6
	계	3	0	4	2	1	2.0
피해자 수	성희롱	1	0	1	0	0	0.4
	성폭력	2	0	3	2	3	2.0
	계	3	0	4	2	3	2.4

□ 원인분석

- 성범죄 사건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 행사는 줄어든 반면 개별적인 친목 모임으로 인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추세
- 교외에서 자율적인 술자리를 가질 경우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움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범죄 예방 체계 강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성범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신규 및 재직 교직원에 대한 교육실적 반영
- (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구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상담창구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 체계 구축,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예방교육	4	3	4	1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이다솔	054-478-7140	
팀장	시설안전과	시설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설비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지역협력단	팀장	이재열	054-478-7240	
팀장	총무과	재산관리팀장	진기정	054-478-7125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팀장	공중중합실습센터	팀장	이상현	054-478-7218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1	1	0.4	
재산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1	1	0.4
	계	-	-	-	1	1	0.4

□ 원인분석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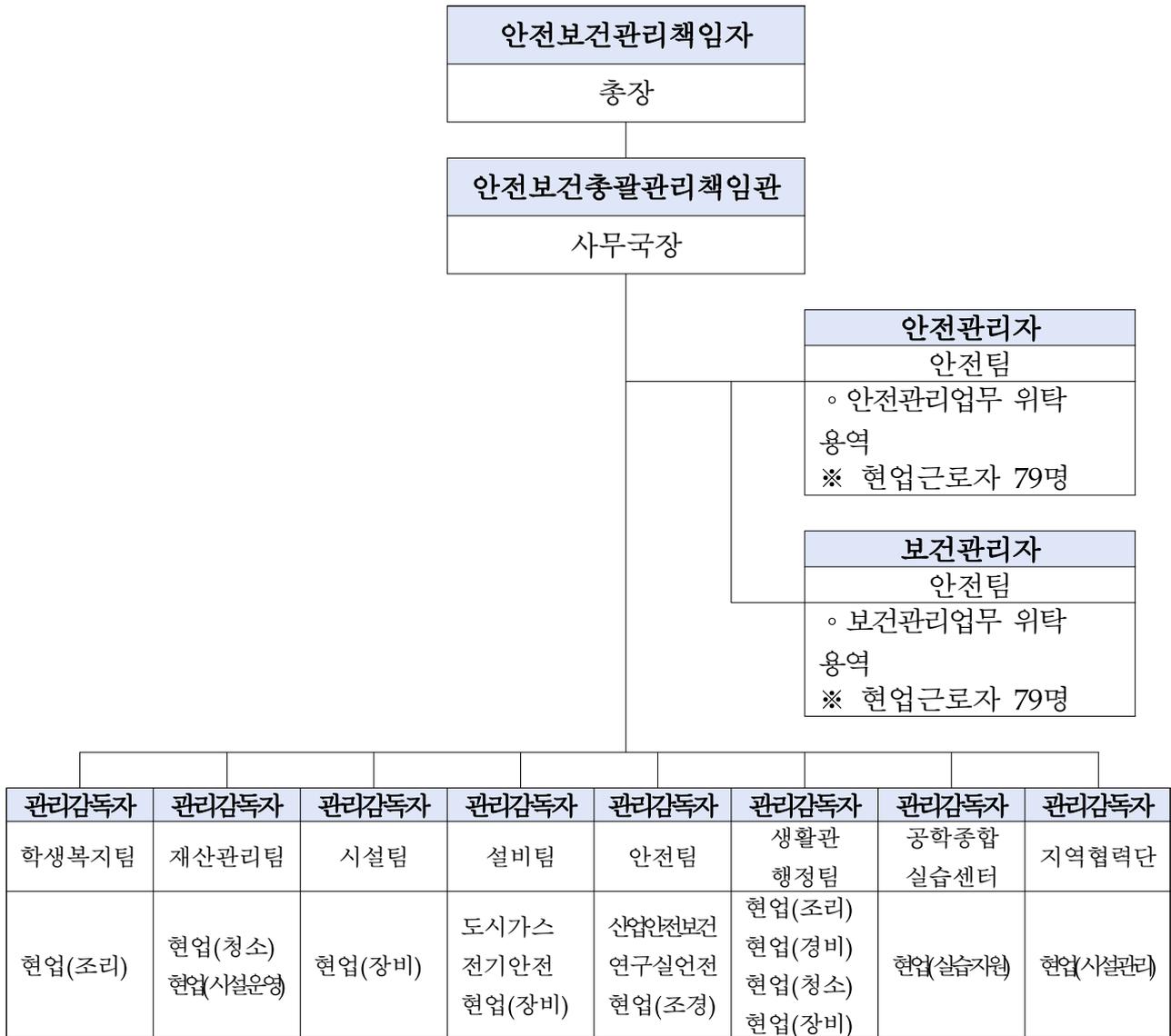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3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4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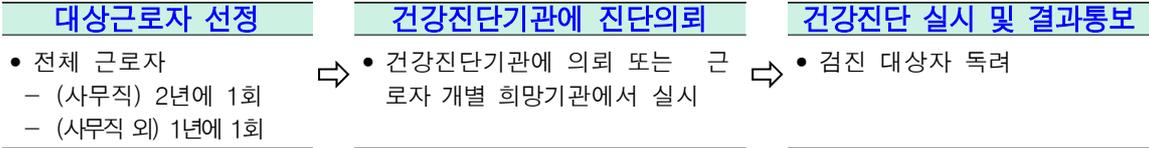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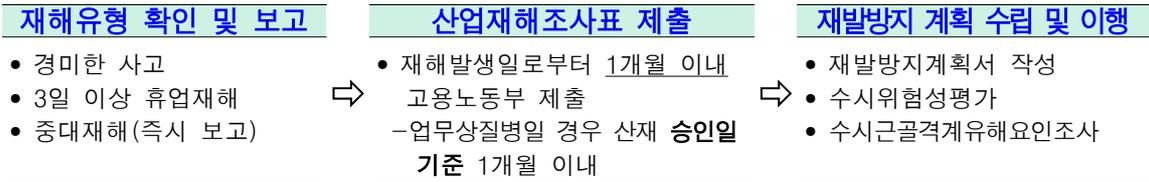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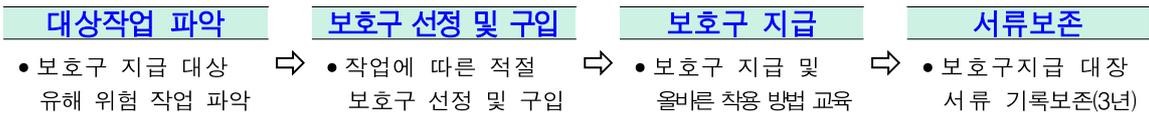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는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는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지원 및 복구 실행(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부서)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산업재해 예방	59	59	59	177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종	054-478-7148	
팀장	시설안전과	시설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설비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지역협력단	팀장	이재열	054-478-7240	
팀장	총무과	재산관리팀장	진기정	054-478-7125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장팀장	한수열	054-478-7942	
팀장	공학종합실습센터	팀장	이상현	054-478-7218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 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없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홈페이지-금오광장-계시판-산업안전보건 제안함) ⇨ •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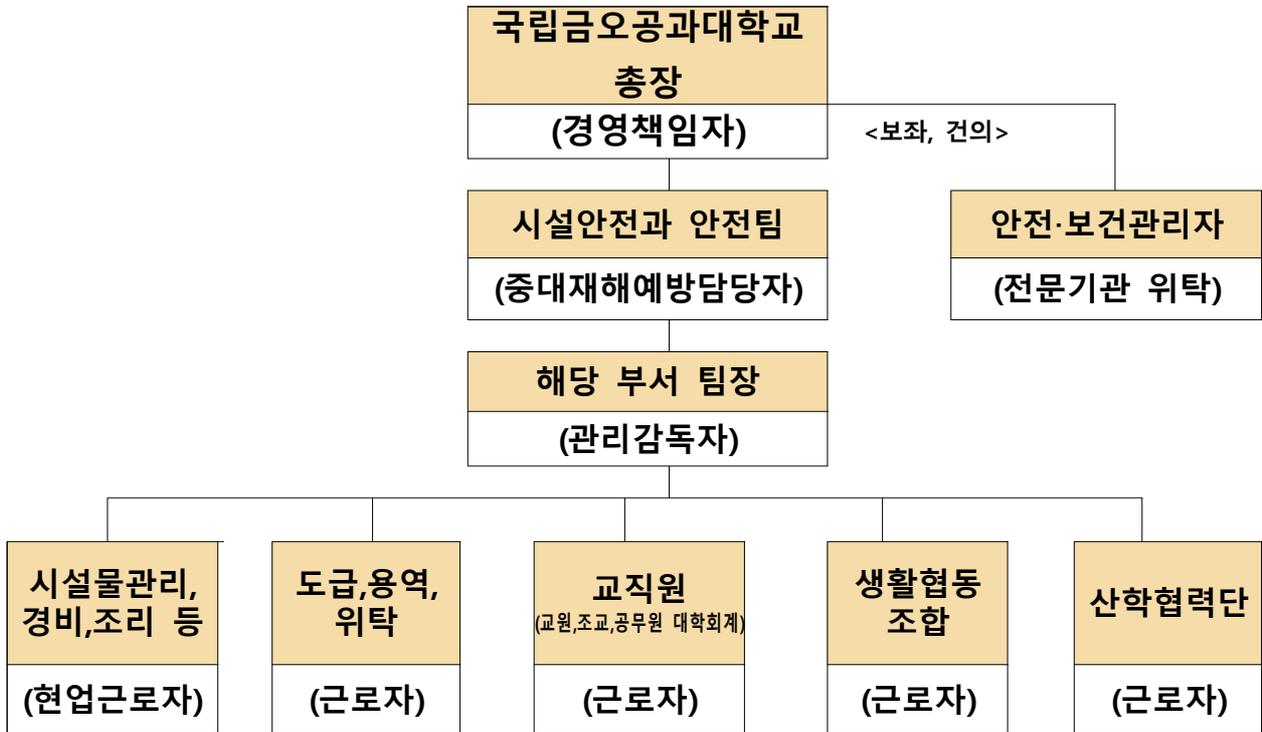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근로자 관리감독부서는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근로자 관리감독부서는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근로자 관리감독부서는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지원 및 복구 실행(근로자 관리감독부서)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중대재해예방사업	30	20	20	70	

6. 사이버

① 사이버 위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정보전산원	정보보안팀장	이정희	054-478-7187	주관부서
팀원	정보전산원	주무관	구승욱	054-478-7185	

□ 위험요인

- (악성코드 감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사이버 공격진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강화가 절실함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 원인분석

- 현재 학교상황
 - 대학 내 보안사고(악성코드 감염)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발생
 - 웹메일 계정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웹메일 시스템 노후에 따른 보안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웹메일 보안 강화) 노후 웹메일 시스템 보강을 통한 보안강화 및 보안감사 강화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참여자 확대)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PMS 및 내PC 보안점검 실시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보안취약점 해소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보안장비운영(보강)	458	471	336	1,265	유지보수비 포함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영업배상책임보험	교육시설공제
연구실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안전공제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영업배상 책임보험	2022-10-08 2023-10-08	4,240원	5,390명	22,856천원	8	1,769천 원	1	158천원	
2024	영업배상 책임보험	2023-10-8 2024-10-8	3,910원	5,432명	21,237천원	23	15,145천 원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2억원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3백만원	3백만원	
	사망,후유장해	1억원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3백만원	3백만원	
	사망,후유장해	1억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2023.1.1. ~ 2023.12.31.	150원/m ²	189,435m ²	28,415	0	0	0	0	순수 건물보험료 (부속물 등 별도)
2024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2024.1.1. ~ 2024.12.31.	150원/m ²	193,414m ²	42,548	0	0	0	0	순수 건물보험료 (부속물 등 별도)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대인)	1.5억 한도		
화재(대물)		10억 한도	
시설소유자(대인)	3억 한도	3억 한도	
시설소유자(대물)		10억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연구실 안전공제	2022-04-22 2023-04-21	3	6,000	20,000	-	-	-	-	가입 예정
2023	2023	연구실 안전공제	2023-04-22 2024-04-21	4	6,000	24,000	-	-	-	
2024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4-04-22 2025-04-21	4	6,000	24,000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500,000	500,000	
장해급여	500,000	500,000	
요양급여(치료비)	2,000,000	2,000,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1일당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종	054-478-7148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협조부서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재난·소방안전 온라인교육	'23.12.18.~'23.12.27.	1h	253	-
재난대응체험시설 방문	'23.6.27.	2h	15	475천원
	'23.12.21.	2h	15	475천원
홍보	'23.2.2.	-	-	-
소방안전교육	'23.2.2.	1h	203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	-	-
시설안전점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난·소방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2023. 12. 18. ~ 12. 27.(10일간) / 전 교직원 방법/내용 : 온라인교육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안전길라잡이 등
재난대응체험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2023.12.21. 14:00~18:00 / 신규직원, 교육희망자 장소/내용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동구) / 재난체험 및 교육(지하철안전, 위기대응 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2023년 10월 중 / 대학구성원 방법/내용 : 온라인 홍보 / 안전한국훈련 홍보(현수막, 홍보영상 등)
소방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2023.2.2. / 교직원 방법/내용 : 소방합동훈련 / 화재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매월 / 대학구성원 방법/내용 : 공문시행 / 재난안전사항 안내
시설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학교시설 방법/내용 : 점검 / 시설점검 및 조치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비상소집훈련	안전한국훈련기간	-	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원	-
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기간	1h	대학구성원	950천원
토론훈련	안전한국훈련기간	1h	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원	-
홍보	안전한국훈련기간	-	대학구성원	-
소방안전교육	연2회	1h/회	교직원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	대학구성원	-
시설안전점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대학시설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소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1일차 / 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원 내용 :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집능력 점검
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 대학구성원 내용 :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토론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 지진, 화재, 사이버위기 등 관련부서 내용 : 사고대비 긴급대응 및 수습·복구관련 토론훈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안전한국훈련 기간 전반 / 대학구성원 내용 : 사고사례 및 각종 안전용품 전시·체험
소방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연2회 / 교직원 내용 : 화재예방, 응급처치 등 행동요령
안전점검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매월 / 대학구성원 내용 : 재난안전사항 안내
시설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대상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 학교시설 내용 : 시설점검 및 조치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성공과	팀장	유기영	054-478-7043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임기덕	054-478-7040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협조부서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 각종 학생자치단체 대단위 행사 사전교육 의무 시행
- 실시현황

구 분	행사명	대 상	일 자	인 원
학생행사	2023 신입생 환영회	행사 진행 요원	2023. 3. 8.(수)	40명
	2023 대동제	행사 진행 요원 및 야시장 부스별 책임자	2023.5.9.(화), 5.15.(월)	60명
	2023 공학제	행사 진행 요원 및 야시장 부스별 책임자	2023. 10. 30.(월)	50명
LT 등	동계 총학생회 LT	총학생회 소속 학생	2023. 1. 28.(토)	38명
	하계 총학생회 LT	총학생회 소속 학생	2023. 7. 22.(토)	55명
	전간부 수련회	학생자치단체 및 학부(과) 학생회 소속 학생	2023. 2. 4.(토)	97명
	동계 총동아리연합회 LT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	2023. 1. 28.(토)	12명
	하계 총동아리연합회 LT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	2023. 8. 18.(금)	17명
	동계 감사위원회 LT	감사위원회 소속 학생	2023. 1. 27.(금)	14명
	하계 감사위원회 LT	감사위원회 소속 학생	2023. 8. 24.(목)	28명
	동계 졸업준비위원회 LT	졸업준비위원회 소속 학생	2023. 2. 11.(토)	15명
	하계 졸업준비위원회 LT	졸업준비위원회 소속 학생	2023. 7. 22.(토)	20명
	동계 금오편집위원회 LT	금오편집위원회 소속 학생	2023. 2. 1.(수)	12명
	하계 금오편집위원회 LT	금오편집위원회 소속 학생	2023. 8. 27.(일)	21명
	국토대장정 봉사활동	봉사활동 참여 학생	2023. 8. 26.(토)	35명

○ 추진내용

- 안전사고 시 보고체계 정립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화재 시 대응요령 교육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 전파 등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상·하반기	1	600	비예산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행사 진행 시 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제 등 축제 및 각종 행사 사전 운영진 대상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팀장	이상헌	054-478-7093	주관부서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민구	054-478-7154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협조부서
팀장	생활관	팀장	한수열	054-478-7942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담당 부서	인원	예산
현업업무 종사자(조리)	매월	2h/월	생활관	▪ 51명	-
			학생성공과	▪ 8명(학기중) ▪ 5명(방학중)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종사자 대상 식중독 위생교육(1h) ▪ 학교급식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1h)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현업업무 종사자	반기별 1회	12h/반기	80	-
현업업무 종사자(조리)	매월	2h/월	65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교육(반기별 1회)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종사자 대상 식중독 위생교육(1h) ▪ 학교급식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1h)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이다솔	054-478-7140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상반기 신규교육훈련	온라인	4. 3. ~ 5.31.	1,165	7,700
상반기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4. 3. ~ 5.31.	2,914	
하반기 신규교육훈련	온라인	9.11. ~ 12.15.	121	
하반기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9.11. ~ 12.15.	3,647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학기(4~5월), 2학기(9~12월) 2회 대상 : 신입생 등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
정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학기(4~5월), 2학기(9~12월) 2회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합	2	1,500	1,000천원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2	6,000	7,700천원
특별안전교육훈련	집합	2	200	1,000천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학기(3월), 2학기(9월) 2회 ▪ 대상 : 신입생,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등 ▪ 방법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필수 기초과목 수업시간 할애하여 학과 자체 집합교육 실시
정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학기(4~5월), 2학기(9~12월) 2회 ▪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월, 10월 ▪ 대상 : 고위험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등 ▪ 방법 : 연구실 점검결과 및 안전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6.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부팀장	한상규	054-478-7047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이서현	054-478-7911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협조부서
팀장	교무과	학사팀장	장준일	054-478-7027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	2.27.	2	1,100	-
	5.30.	2	41	759
	11.14.	2	32	689
	11.27.-12.8.	2	334	1,988
교직원	6.7.	2	104	858
	11.14.-11.30.	2	101	-
	7.10.-12.31.	4	77	-
	11.27.-12.11	4	14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대상 예방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3	1800	4,000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2	350	
교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2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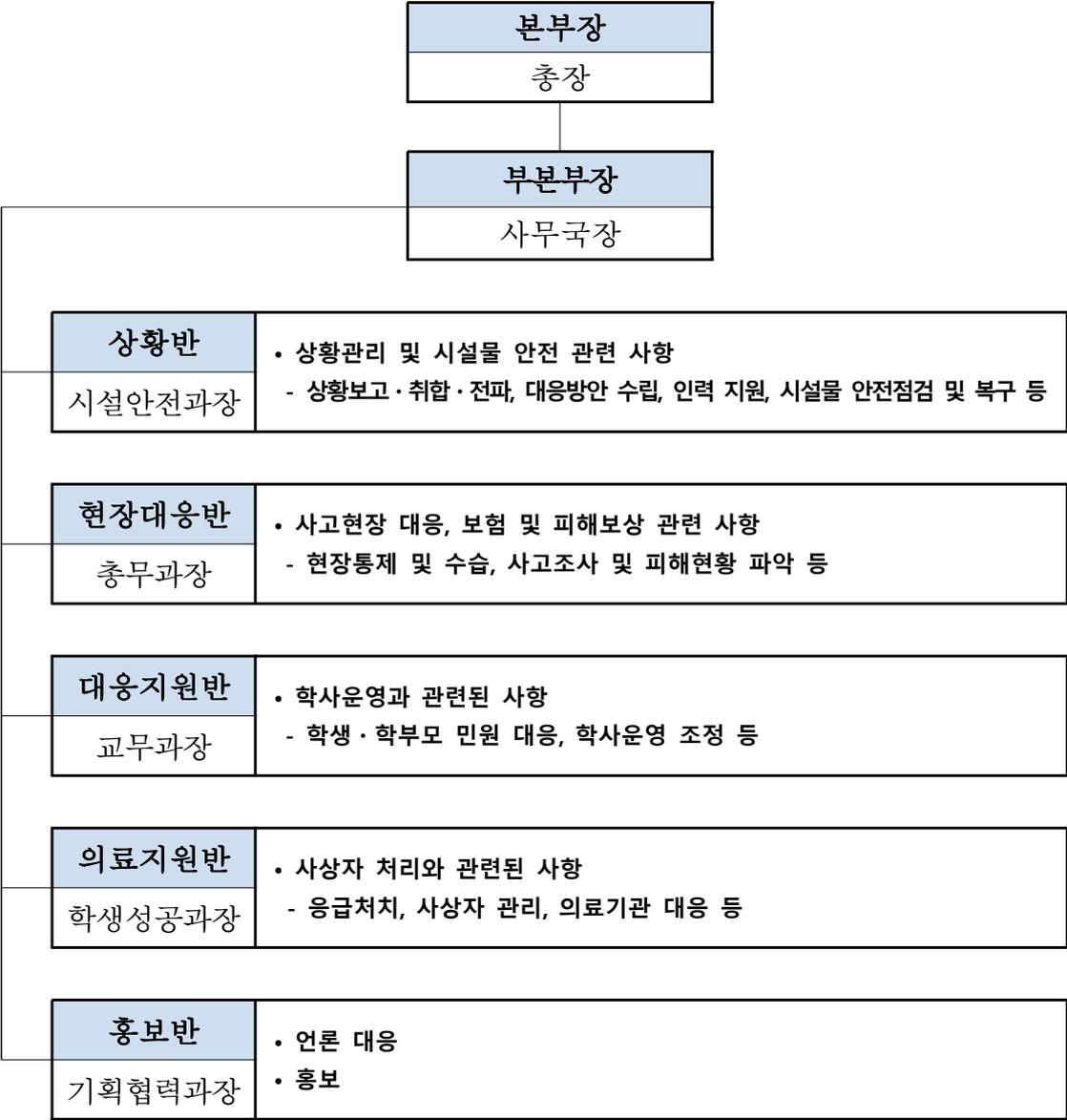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대상 예방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난안전관리본부



- 심각 단계의 재난 발생하여 담당부서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 편성·운영
 - 심각 단계 외에는 사고관련 담당부서에서 자체 대응
- 감염병, 식중독, 사이버, 학생안전 사고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별도 편성·운영

□ 단계별 위기상황 관리

○ 위기 단계별 상황관리

관심 · 주의 · 경계(경미한 사고)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자체 대응 • 재난별 재해대응반 구성 및 가동 	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

○ 경계(경미한 사고) 및 심각단계 구분

○ 경계(경미한 사고) 및 심각 단계 구분

구 분	경계(경미한 사고)	심각
자연재난	-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	-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태풍, 호우 등의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인명, 시설물 피해	- 경미한 부상 - 1억원 미만 대물 피해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부상사고 - 1억원 이상 대물 피해
화재사고	- 화재가 초기 진화된 경우	- 초기 진화 실패 시
사이버 침해사고	-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장애 발생	-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사용 불가능
감염병 사고	- 국내 감염병 환자 발생 - 감염병 타지역 전파	- 감염병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학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식중독 사고	- 식중독 예보지수 95미만	- 식중독 예보지수 95이상 - 30% 이상 식중독 증세 환자 발생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관 기관		구분	전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재난, 안전관리 총괄	044-203-6893
	교육시설과	시설관리	044-203-6183
	학생건강정책과	감염병	044-203-6547
		학교급식	044-203-6543
	당 직 실		044-203-6118
	통합상황실		044-203-6676
구미시청	안전재난과		054-480-6736
	당 직 실		054-480-6114
구미보건소			054-480-4000
구미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054-459-1100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8-0300
한국전력 구미지사			054-479-9351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88-0019
구미경찰서			054-450-3324
구미소방서	구미소방서		054-440-0143
	옥계 119 안전센터		054-471-5119
	공단 119 안전센터		054-461-3119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비상연락망

구분		전화	
본관 당직실		054-478-7000	
중앙제어실		054-478-7144	
양호동	에스원 상황실(정문)		054-478-7101
	기숙사	푸름관 통합경비실	054-478-7948
		오름관1동 경비실	070-8786-5004
		오름관2동 경비실	054-479-4301
		오름관3동 경비실	070-7198-1650
신평동	정문 수위실		054-464-6146
	생활관	신평동 생활관	054-462-0619

○ 재난상황 교육부 보고 서식

기관명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FAX:
-----	--	-----	--	--------------------------

재난 상황 보고

1. 재난개요

- 가. 재난원인 :
- 나. 재난기간(시간) :
- 다. 재난지역 :

2.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
- 나. 시설피해 :

(단위: 천원)

피해상황	기관명	행정구역명	학교급별	설립구분	학교명	피해내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조	피해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구소요액	복구계획

태풍 및 호우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등하교 시간조정, 휴업/휴교)

번호	지역	학교급별	학교명	조치사항	비고
1					
2					
3					

※ 조치사항 란은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휴교 등으로 작성(별지작성 가능)
 - 등·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예: 등교시간 8시→10시로 조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이재민 발생 시 수용시설(학교 등) 지정 등 조치 현황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는 사항은 “해당없음” 으로 표기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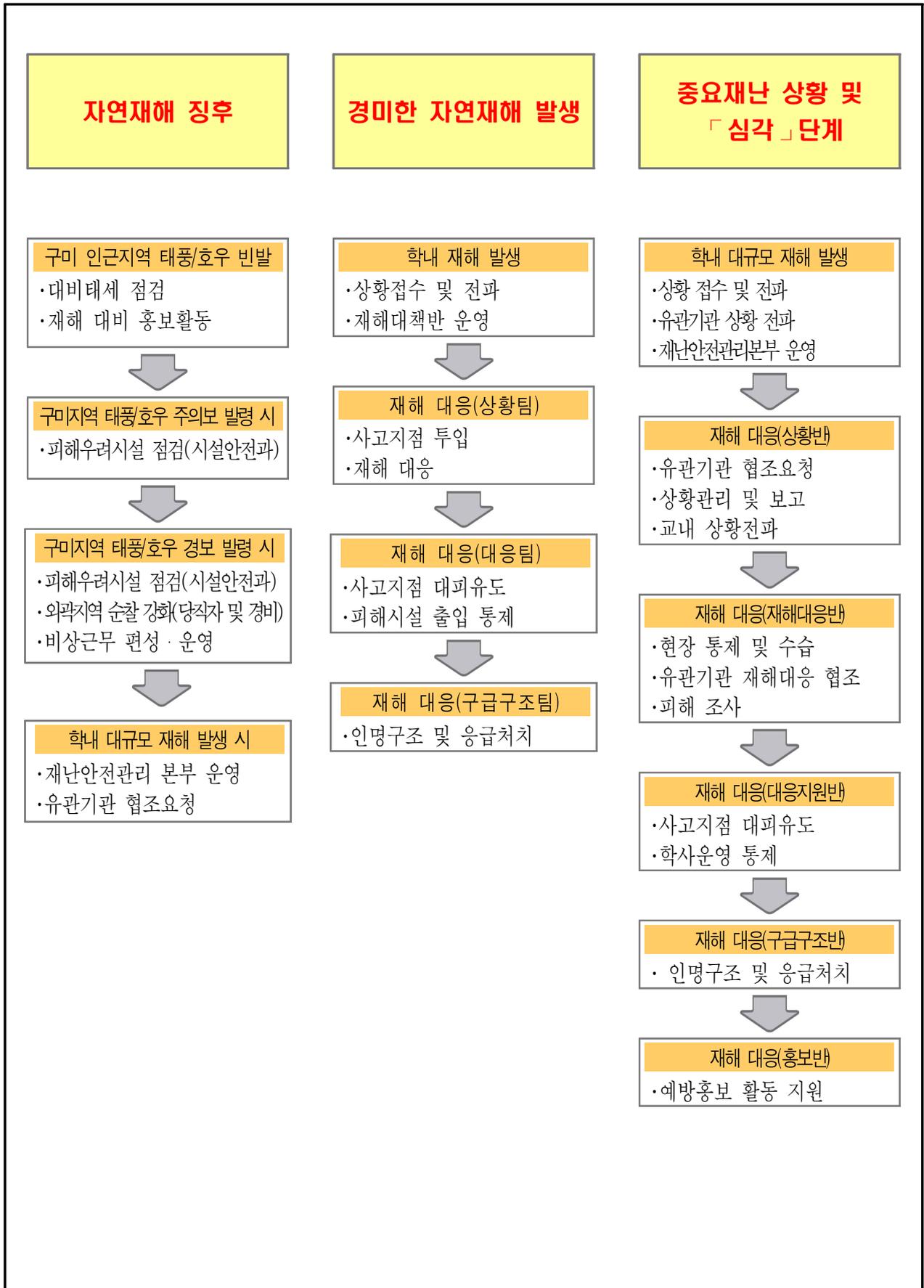
VI 위험요인별 대응 매뉴얼

풍수해

1. 풍수해 발생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 분	조치사항
<p>관심 >인근지역 태풍/호우 반발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모니터링(시설안전과) ○ 재난대비 홍보(시설안전과) ○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 ○ 비상연락망 정비(총무과)
<p>주의 >구미지역 태풍/호우 주의보 발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역, 공사현장 등 예찰 강화(시설안전과) - 퇴실 시 사무실, 강의실·복도의 창문 잠금 상태 확인(전부서) ○ 상황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09:00 ~ 18:00) : 재난업무 담당자 - 야간(18:00 ~ 익일 09:00) 및 휴일 : 당직자 - 야간 및 휴일 : 시설안전과 전원 자택 상황 대기
<p>경계 >구미지역 태풍호우 경보 발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지역(배수로, 급경사지 등) 당직자 및 경비 순찰 강화 ○ 비상근무 편성(상황 종료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09:00 ~ 18:00) : 시설안전과 직원 - 야간(18:00 ~ 익일 09:00) : 당직자 - 야간 및 휴일 : 시설안전과 비상근무자 추가 지정(2명) ○ 학내 재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대책반 운영(시설안전과 전원 소집)
<p>심각 >학내 대규모 재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보고 및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 - 비상근무 명령(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원)

2. 풍수해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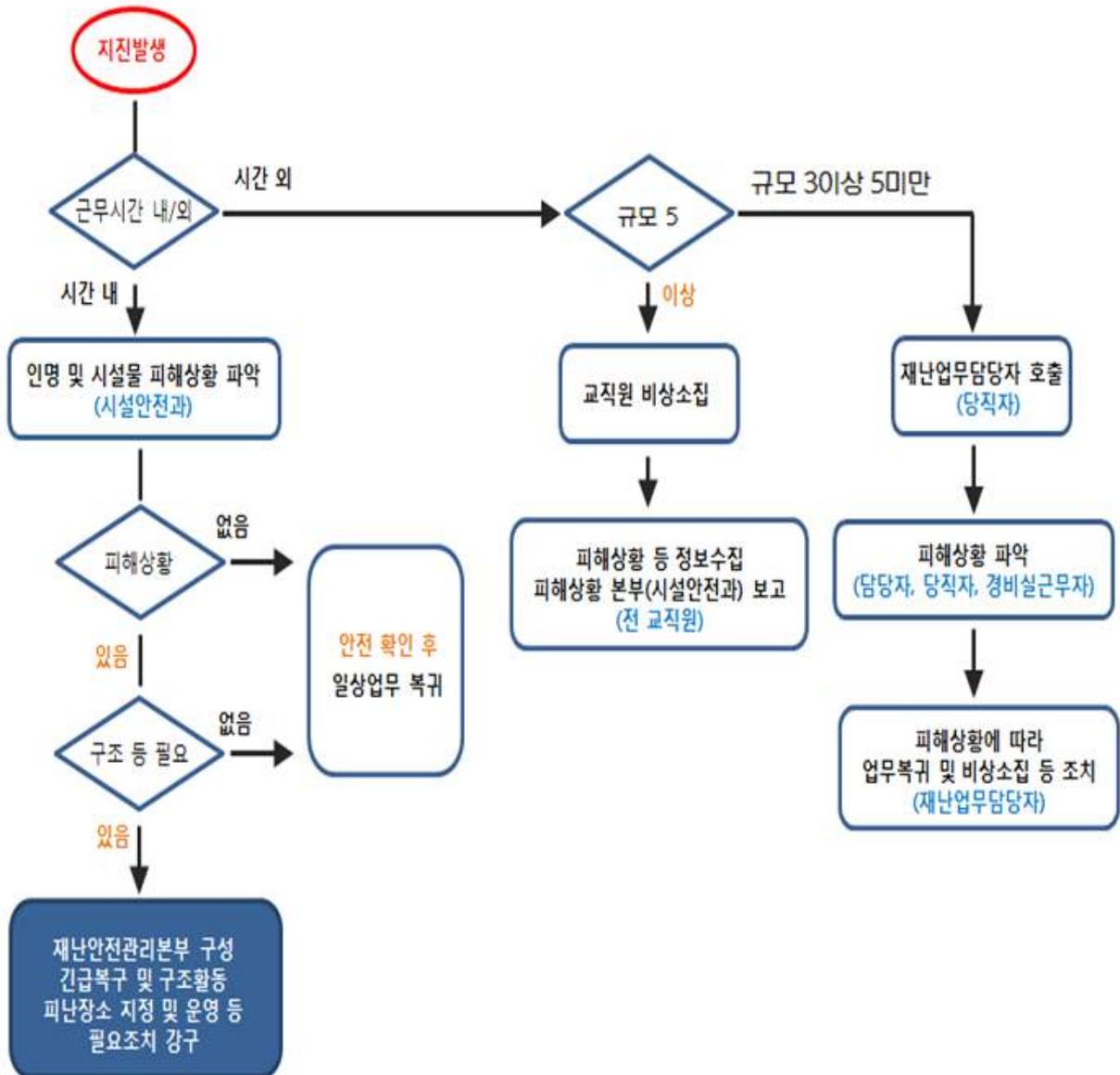
지진

1. 지진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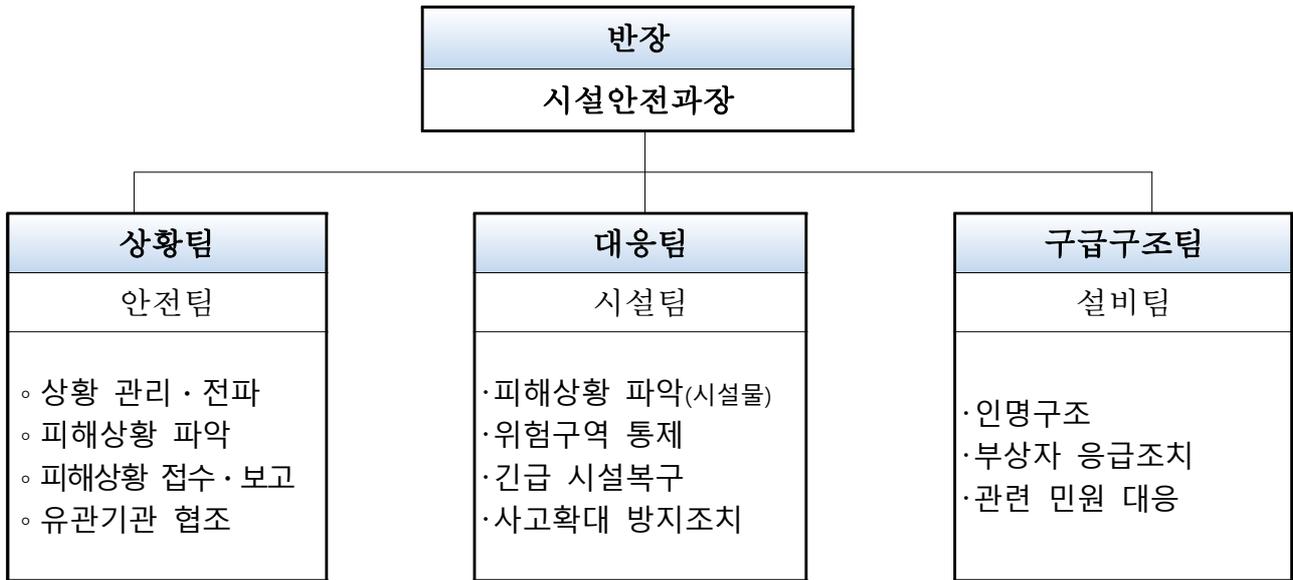
구 분	조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주의</p> <p>➤ 규모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근무 및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09:00 ~ 18:00) : 재난업무 담당자 - 야간(18:00 ~ 익일 09:00) 및 휴일 : 당직자 ※ 피해상황 발견 시 재난업무담당자 호출
<p style="text-align: center;">경계</p> <p>➤ 규모 3 이상 5 미만 학내 소규모 재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대책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실험실 등 점검 및 피해상황 파악 - 상황 전파 및 사후대책 수립 - 피해상황 접수 및 보고 ○ 상황근무 및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09:00 ~ 18:00) : 시설안전과 - 야간(18:00 ~ 익일 09:00) : 당직자 ※ 지진 발생 즉시 재난업무담당자 호출
<p style="text-align: center;">심각</p> <p>➤ 규모 5 이상 또는 학내 대규모 재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의 경우 재난안전관리본부 구성원 전원 비상소집 - 인명 및 시설물·실험실 등 피해상황 파악 - 시설물 긴급 복구 및 위험구역 통제 - 피난장소 지정 및 운영 - 지자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 비상근무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등 피해상황 수시 확인 및 상황조치 ○ 학생안전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활동, 학생행사 통제(학생성공과) -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교무과)

2. 지진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

- ※ 지진 발생 정보는 기상청 지진 관측 또는 지진가속계측기 계측자료를 활용
- ※ 진앙에 속해 있거나 진앙으로부터 반경 100km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사고 대책반(풍수해, 지진)



※ 「심각」단계 시 대책반 구성은 재난안전관리본부 편성에 따름

4. 비상근무 편성

구분	비상 근무조	구분	비상근무조
1조	이한성, 장계훈	2조	최태순, 엄철용
3조	손혜정, 우동근	4조	우정택, 이유진
5조	정우진, 김영희	6조	이경만, 이병희
7조	김혜정, 전수호	8조	윤찬중, 이다솔

※ 비상근무는 평일의 경우 18시~익일 09시, 휴일의 경우 09시~18시, 18시~익일 09시의 시간 간격을 두고 1조씩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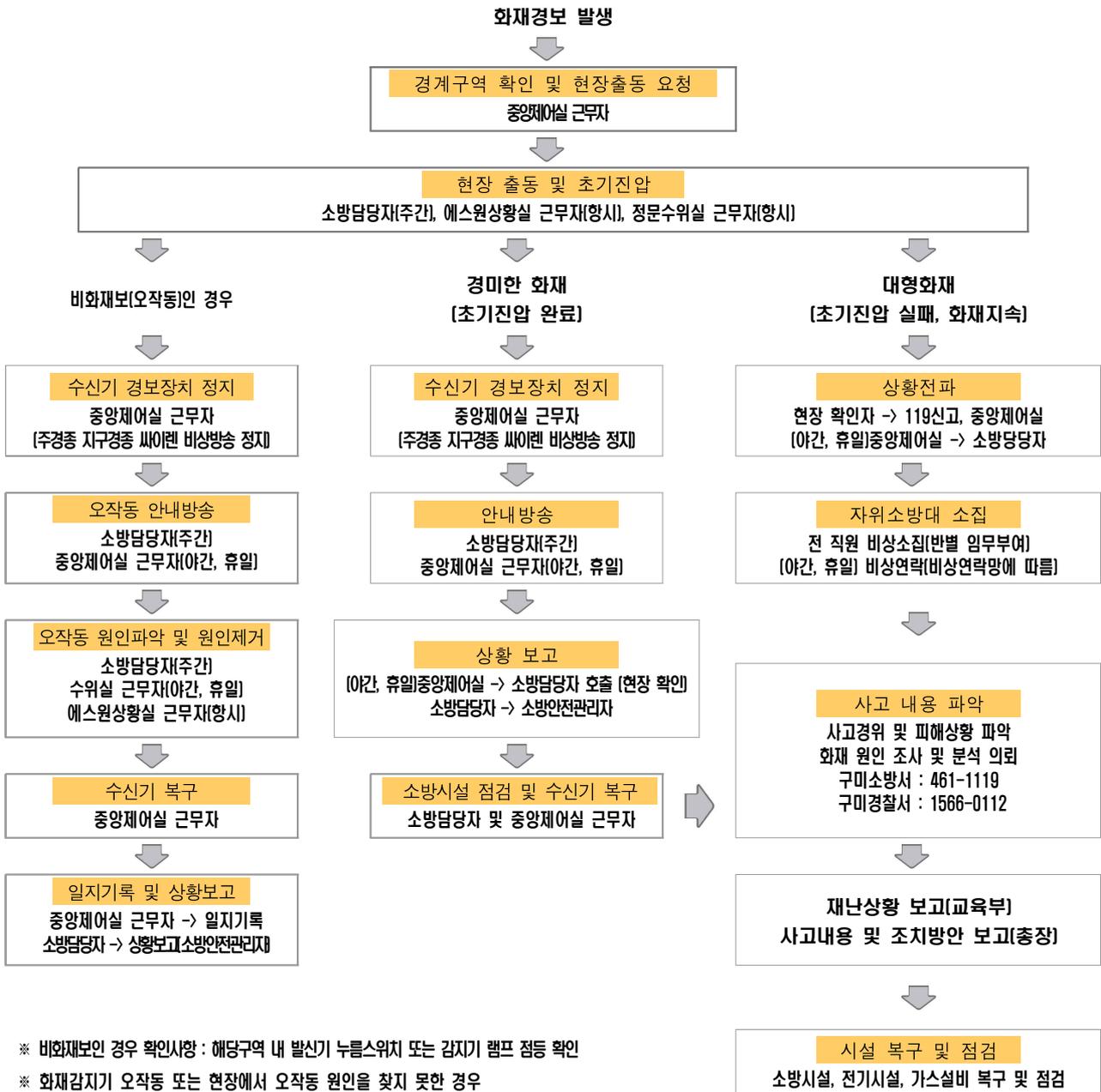
※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 변동 시 업무분장 상 후임자가 전임자를 승계

화재

1. 화재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 화재의 경우 관심·주의·경계 구분이 없으며, 초기진압 실패 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집

2. 화재 사고대응 흐름도



※ 비화재보인 경우 확인사항 : 해당구역 내 발신기 누름스위치 또는 감지기 램프 점등 확인
 ※ 화재감지기 오작동 또는 현장에서 오작동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 (1회에 한해) 수신기 복구 후 오작동 재발생 여부 주시 -> (재발생한 경우) 필요조치 강구

※ 생활관(푸름관, 으뜸관, 신평동 캠퍼스) : 비화재보 또는 경미한 화재의 경우 상황 조치 후 소방담당자 또는 중앙제어실(야간, 휴일) 연락
 대형화재의 경우 119신고와 함께 소방담당자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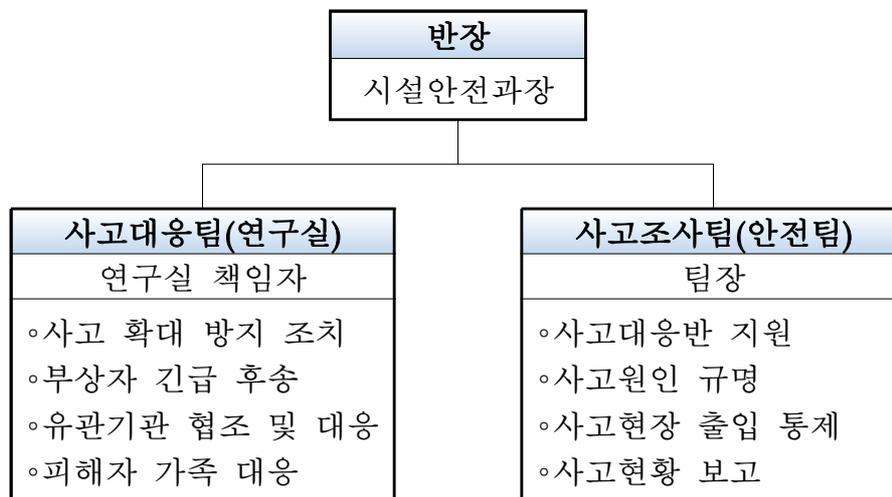
※ (야간, 휴일) 오작동 재발생, 소방설비 고장 등으로 현장인원만으로는 수신기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담당자 호출

실험실

1.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

진행 단계	수행 업무	업무 수행
연구실 사고 발생		
↓		
사고보고	○ 최초발견자(연구실책임자)→안전담당부서(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주체의장	○ 연구실 관계자
↓		
사고대응	○ 필요 시 연구실사고대책본부 구성(중대사고 시) ○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및 응급조치	○ 연구실 관계자
↓		
사고조사	○ 사고원인 규명 및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 안전환경관리자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연구실책임자) ○ 재발방지 대책 보고(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총장)	○ 연구실 책임자 ○ 안전환경관리자
↓		
사후관리	○ 재발방지 대책시행 여부 확인 ○ 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총장 ○ 안전환경관리자

2. 사고 대책반(실험실 사고)



※ 「심각」단계 시 대책반 구성은 재난안전관리본부 편성에 따름

감염병

1. 감염병 발생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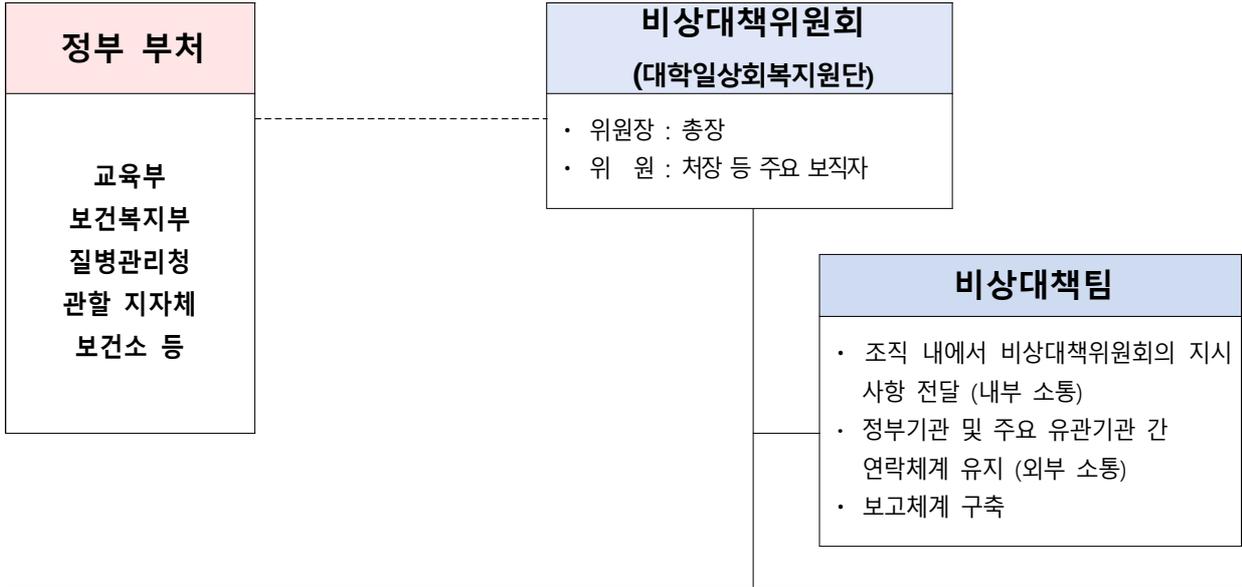
관심 (blue)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부서별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학생성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로부터 위기상황 접수, 교직원 및 학생에게 즉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 활동 • 감염병환자(유증상자포함), 접촉자 파악
주의 (Yellow)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부서별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유증환자, 유사환자 파악 - 사무국, 학생성공과, 교무과, 종합학사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및 유증환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의사 진단일까지)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등교 및 외출 중지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사무국, 학생성공과, 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환자 발생 일지 작성 • 동아리활동,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자제 공문 발송 • 소독관련 물품, 마스크, 체온계 등 점검 • 위생관련시설(손소독기, 비누 등) 점검 • 손씻기 지도,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강화 교육 실시 • 시설물, 교육기자재 등 소독, 방역실시 • 교직원 감염자 관리, 복무관리, 외부인의 출입 자제 관리 • 감염병 환자(외국인포함)를 위한 격리소 운영 - 교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운영 현황 파악 및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처리 대책수립
경계 (Orange)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
	부서별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담당부서는 2단계(주의)와 동일 - 학생성공과 : 동아리활동,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금지 공문 발송 - 교무과, 학생성공과, 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서 협조하에 인력 동원하여 발열 측정 • 보건소 및 인근병원 등과 협의 및 학교감염병대책반을 구성하여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심각 (Red)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부서별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담당부서는 3단계(경계)와 동일 • 동아리활동,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금지 공문 발송 • 보건소 및 교육부 보고체계 점검 및 교내 감염병 관련 보고체계 점검

2. 학내 감염병 확산 시 사고대응 흐름도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분담
1단계 발생 감지	유행예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석학생 및 교직원, 유증상자 · 의료지원실 이용수 현황파악 ·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언론정보 	지도교수 학과(부)사무실 총무팀,생활관 학생복지팀, 홍보협력팀
	환자관리 대책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귀가 조치 : 병원진료 의뢰 ·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가동 	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
	보고/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역학조사 협조(필요시) 	학생복지팀
2단계 발생 확인	진단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 학생 병원 진료 안내 	학생복지팀 학과(부)사무실
	환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및 의사환자 등교중지 	학생복지팀 학과(부)사무실
	확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접촉 장소 소독 및 관리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교육 	설비팀,생활관 홍보협력팀
3단계 확산 초기 및 유행	동태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현황파악(학생 및 교직원) · 의료지원실 이용자 원인별 일일 파악 · 결석자 일일 원인별 동태 파악 	총무팀 학생복지팀 학과(부)사무실
	환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학생 수업결손 대책마련 · 단축수업, 휴업실시 여부 판단 	학사관리팀
	추가 확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소독 및 방역 · 강의실 및 사무실 규칙적인 실내 환기 · 감염환자 확산 방지 교육 및 홍보 · 동아리활동, MT, 단체활동 등 교내 행사 자제 	설비팀 학과(부)사무실 학생복지팀 학생지원팀 생활관
	언론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일관된 자료 제공 	홍보협력
4단계 감염병 종식	동태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환자 동태파악 · 필요한 학생의 경우 등교중지 계속 	학생복지팀 학과(부)사무실
	출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치후 등교시 출석인정 	학사관리팀
	감염병발생 종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선언 및 보고 	학생복지팀

3. 사고 대책본부(감염병)

<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



대응팀				
상황총괄반	방역관리반	학사운영반	복구지원반	홍보·소통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 수행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원격근무체계 도입·운영 · 협력업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관리 · 환자발생현황 모니터링 · 대면수업 중 방역 수칙 준수여부 관리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관리 (위생, 소독용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비대면 수업 전환 기준 설정 · 수업별 진행과정 및 애로사항 점검 · 원격수업 질 관리 · 교수자 확진·격리로 인한 수업 공백 시 대체 강이자 섭외 또는 비대면 수업 전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 결근 직원의 복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포털, 커뮤니티, SNS,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학내 확산 및 조치 상황 공유 ·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과 · 학생과 · 기획협력과 · 총무과 · 정보전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 총무과 · 국제교류교육원 · 종합학사행정실 · 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학사관리팀 · 학생지원팀 · 종합학사행정실 · 대학원 · 정보전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산원 · 총무과 · 시설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 정보전산원 · 총무과 · 기획협력과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일상회복지원단,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의료지원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부득이한 경우 학교 자체 이송)
-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7일간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확진자(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접촉 미완료자 7일간 자가격리 준수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학생: 출석 인정 / 교직원: 병가, 공가,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등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항원 검사 또는 필요시 자가 격리 실시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 문자 전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히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히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일시적관찰실)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신속항원검사,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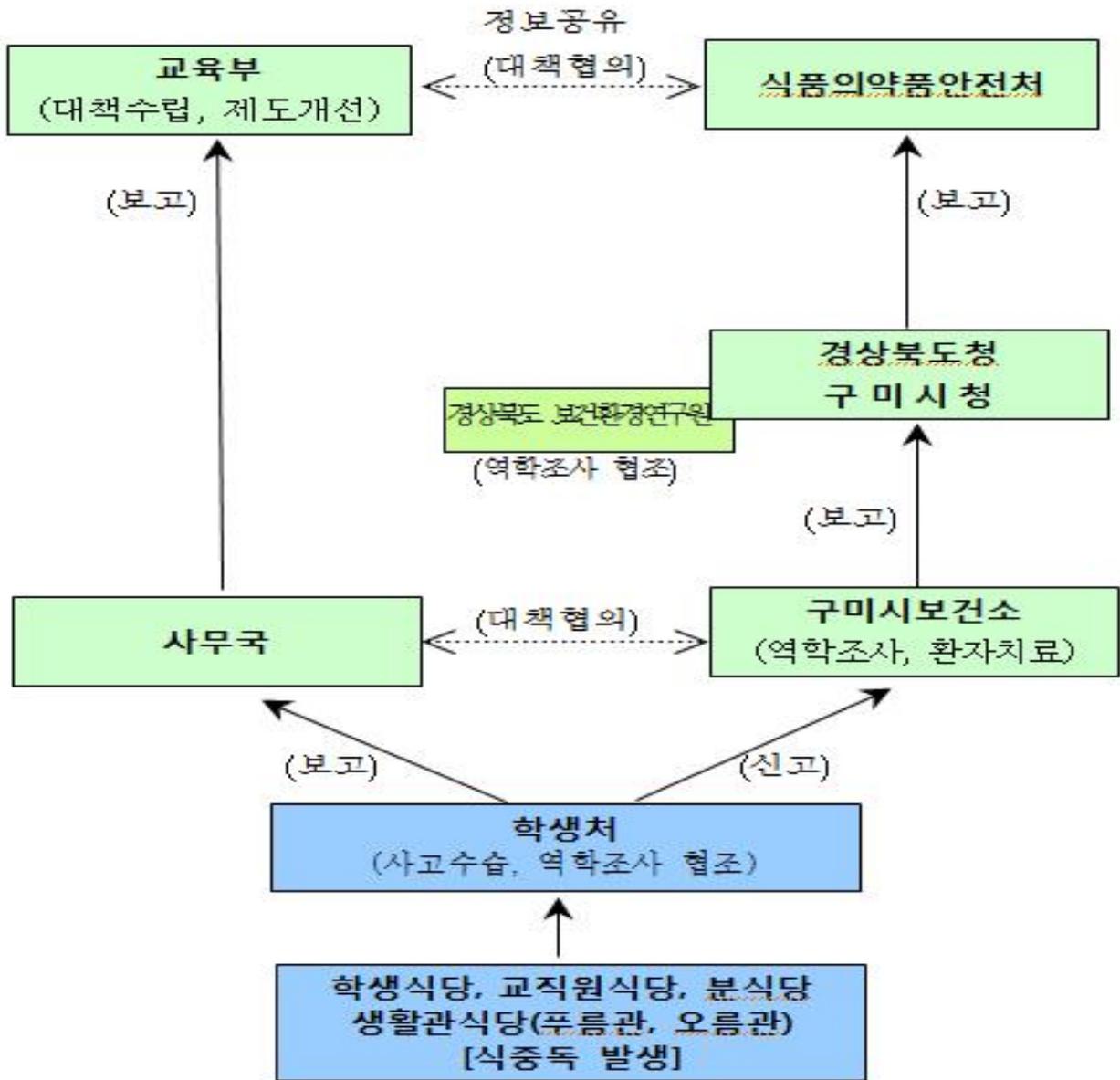
식중독

1. 식중독 발생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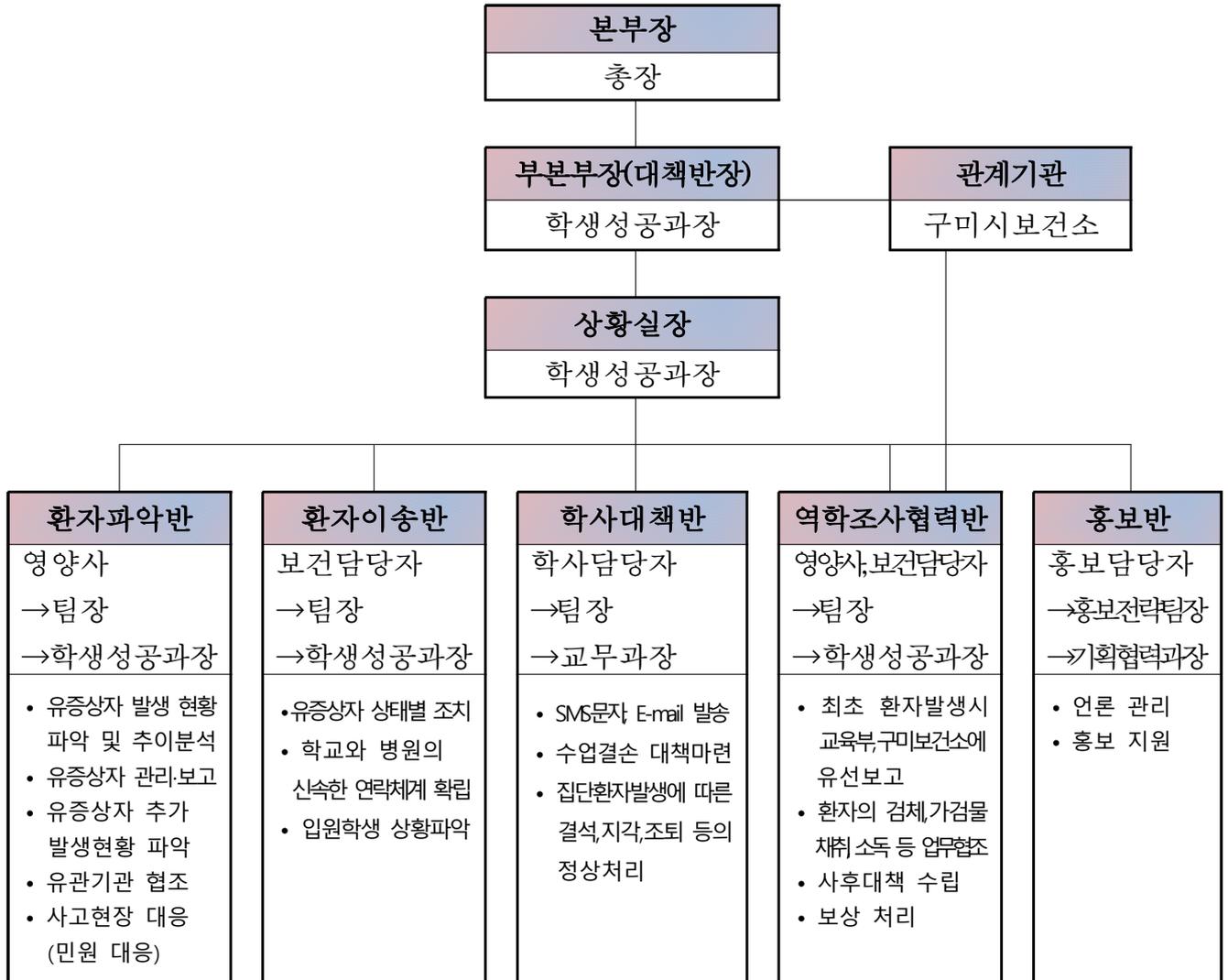
구 분	조치계획
관심단계 (Blue)	□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안전처의 식중독 예보지수 10~34(관심)단계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하절기)
관심단계 (Blue)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협력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식품위생 홍보 ▪ 학생성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 - 구성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예방교육 실시
주의단계 (Yellow)	□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안전처의 식중독 예보지수 35~70(주의)단계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보도 ▪ 일부 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주의단계 (Yellow)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성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토,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의 환자 2인 이상 동시발생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방역기관 협조로 유증상자 치료 및 확산 방지 - 급식현장 보존 및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 협조 -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 학교 급식 중단 및 임시 급식대책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도시락 지참 및 특별급식 강구 (인근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빵 혹은 우유 등 대체) - 동아리활동, 졸업여행, MT 등 단체활동 자제 ▪ 교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에 대한 구성원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구 분	조치계획
경고단계 (Orange)	□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보지수 70~94(경고)단계 ▪ 일부 지역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 100명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경고단계 (Orange)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성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토,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철저 -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의 환자 2인 이상 동시발생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방역기관 협조로 유증상자 치료 및 확산 방지 - 학교 급식 중단 및 임시 급식대책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도시락 지참 및 특별급식 강구 (인근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빵 혹은 우유 등 대체) - 급식현장 보존 및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 협조 -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 동아리활동, 졸업여행, MT 등 단체활동 자제/금지 ▪ 교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상황에 대한 구성원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 집단환자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 등 공결처리
위험단계 (Red)	□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보지수 86이상(위험)단계 ▪ 단위학교 학생의 30%이상 식중독 증세의 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위험단계 (Red)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성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토,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의 환자 2인 이상 동시발생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방역기관 협조로 유증상자 치료 및 확산 방지 - 학교 급식 중단 및 임시 급식대책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도시락 지참지도 및 특별급식 강구 (인근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빵 혹은 우유 등 대체) - 급식현장 보존 및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 협조 -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 동아리활동, 졸업여행, MT 등 단체활동 금지 ▪ 교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상황에 대한 구성원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 집단환자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 등 공결처리

2. 학내 식중독 발생 시 사고대응 흐름도



3. 사고 대책본부 구성(식중독)



범죄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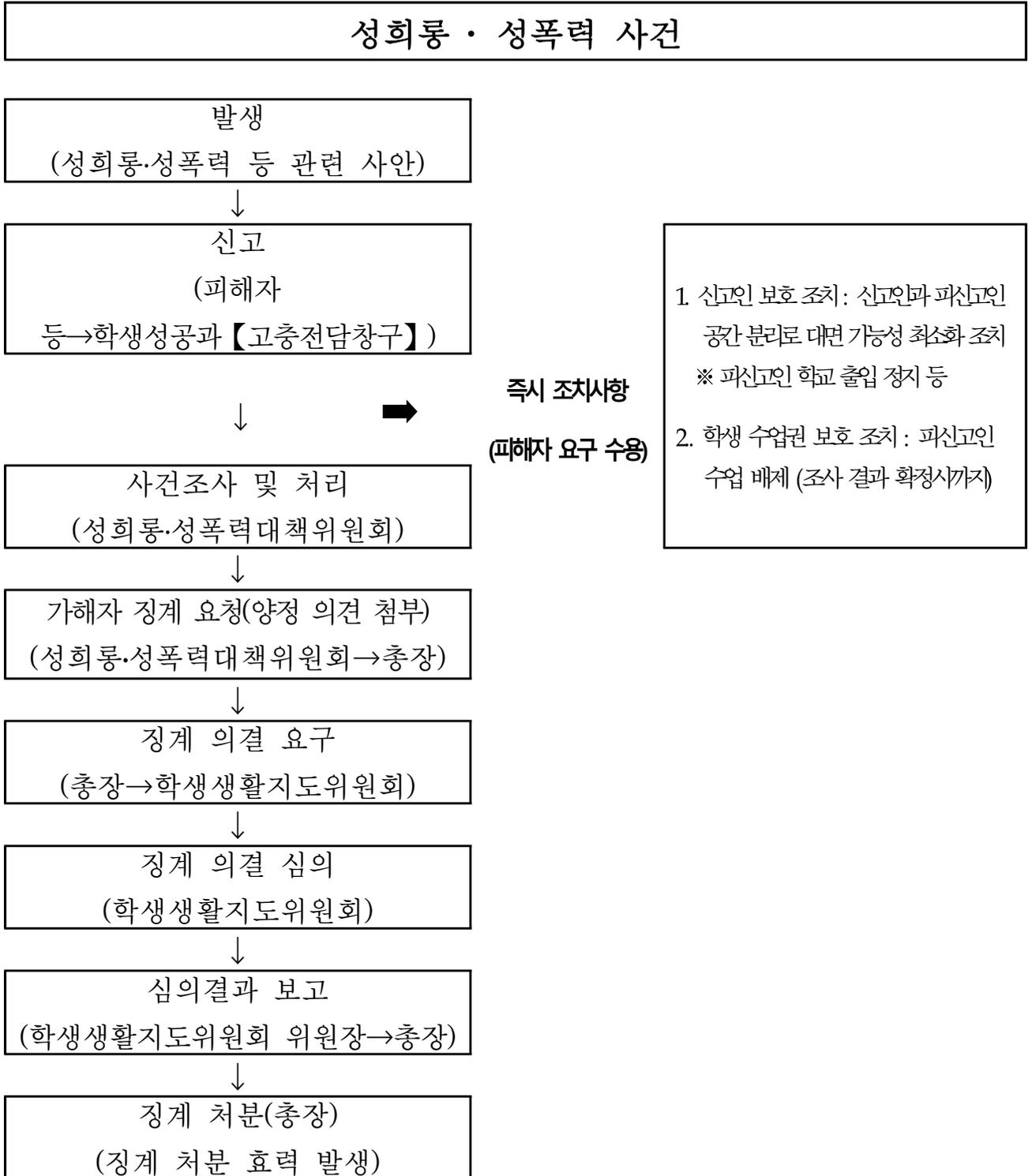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주의 (노란색)
교육부장관(총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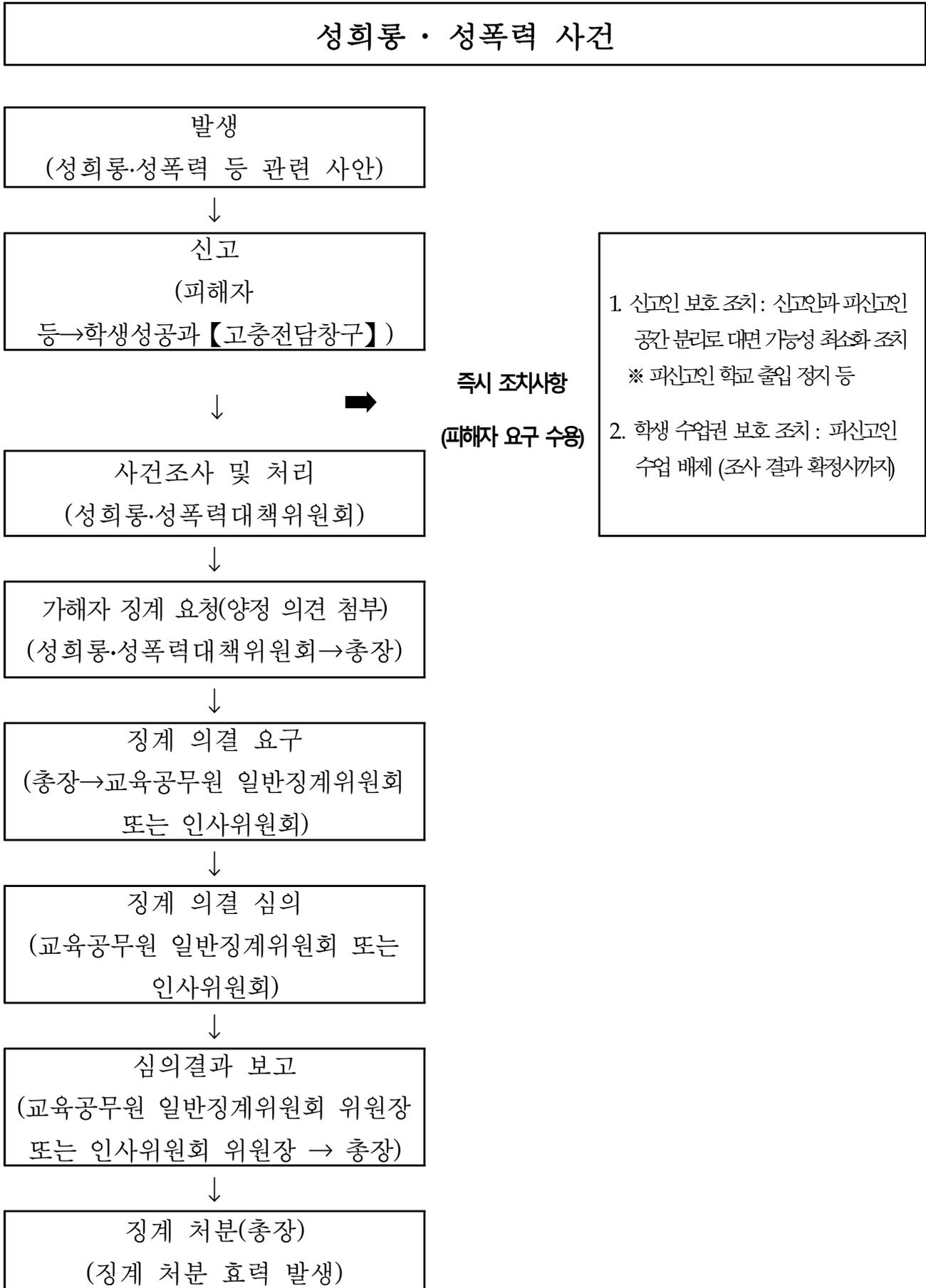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성희롱 · 성폭력

1. 학생-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2. 교직원-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1. 목적

본 매뉴얼은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정보 시스템이 위협받거나 중요 업무자료의 유출 및 대학 기능이 전체적·부분적으로 마비 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기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마비, 대외비·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자료 유출 등 사이버위기 상황 발생 시 사이버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전산원의 사이버 위기 수준별 대응활동에 적용한다.

3. 위기경보 단계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 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도가 높은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악성코드, 취약점 및 해킹기법 출현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 침해사고가 일부기관에서 발생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상황 조성 등 사이버위협 가능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 징후 • 감시 • 강화
주 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 • 체계 • 가동
경 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망·기간통신망 장애발생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 • 대응 • 태세 • 돌입
심 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주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규모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 역량 • 총동원

* 위협 정도가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기경보의 이전 단계인 **“정상”(Green)** 수준으로 간주

4. 위기 정보 수준별 기본 대응

4.1 위기 정보 수준별 대응 기본 방향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위기사태 조기 해소를 위기대응 목표로 하며 대응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사이버 위기 정보 발령 및 대응요령의 학내 전파
- 사고원인 파악 및 대응책 수립, 신속한 복구 지원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공격진원지·경유지 차단, 백신배포
- 국내외 사이버 안전관련 유관기관(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 및 업체와 대응공조
-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신속 이행

4.2 위기정보 수준별 기본 3단계 대응

위기정보 수준별 기본 대응 사항으로는 3단계로 구성한다.

- 1) 1단계: 학내 사이버 위기 정보 발령 및 대응 매뉴얼 전파
 - 학내에 사이버 위기 정보 발령 및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전파
 - 전산정보원은 보안 모니터링, 사고신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사이버 위기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2) 2단계: 신속한 대응조치 수행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위기정보 등급, 대응요령 등을 참고하여 대응수준을 결정
 - 보안관제 강화 및 피해사실 파악
 - 백신업체를 통한 컴퓨터 백신 개발·배포
 - ISP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공격지(네트워크) 차단
 - 피해발생 시 대응조치 이행
- 3) 3단계: 피해 보고 및 복구 활동 전개
 - 학내 전체의 조치결과를 종합, 교육부(ECSC)에 상황통보
 - * 상황통보 양식은 「붙임2」 참조
 - 사고발생 시 관련 사항을 교육부(ECSC)에 사고 내역 신고
 - * 사고 신고 양식은 「붙임1」 참조
 - * * 피해사실 교육부(ECSC) 신고 시 [붙임기] 교육부(ECSC) 양식으로 공격정황 체증 자료 등록(교육부 교육 정보화과-5931(2020.9.21.) 「교육(행정)기관 침해사고 관련 협조안내」 관련)
 - 피해 원인 분석, 취약점 보완, 대응책 수립 이행
 - 유관기관 및 민간 정보보호업체 등과 합동복구 활동

5. 위기 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5.1 관심단계

구분	조치사항
초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전체에 '관심' 경보 전파 ○ 비상연락망 점검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종 워·바이러스 출현 및 추가공격 대비 보안관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전체 PC에 대해 “내PC지키미” <안전한 항목> 100% 유지 ○ 기술·관리·물리적 보안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보안장비 업데이트 점검 - IPS, 방화벽 보안정책 점검(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포트 차단) - 해킹 의심메일 열람 금지 및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접속 차단 ○ 공격탐지규칙 적용, 백신 및 탐지규칙 배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ECSC)으로부터 제공받은 탐지규칙 적용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결과 종합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조치결과를 교육부(ECSC) 통보

5.2 주의단계

구분	조치사항
초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전체에 '주의' 경보 전파 ○ 공격 차단대책 강구 및 시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oS, 방화벽, IPS 등 공격 탐지 강화 ○ 비상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직원 비상근무 등 대비태세 강화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장비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관제분석 내용 기반 보안 정책 및 임계치 조절 - 공격IP·탐지정책 등 정보를 교육부(ECSC)와 공유하여 보안장비에서 차단 실시 ○ 사고조사 및 피해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입을시 해당시스템 격리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 피해 입을시 복구 및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입은 목록 작성 후 국가정보원(NCSC), 교육부(ECSC) 통보 및 복구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결과 종합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조치결과를 교육부(ECSC) 통보

5.3 경계단계

구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전체에 '경계' 경보 전파 ○ 지휘보고 및 상황 전파 ○ 공격 차단대책 강구 및 시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oS, 방화벽, IPS 등 공격 탐지 강화 ○ 비상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직원 비상근무 등 대비태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장비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관제분석 내용 기반 보안 정책 및 임계치 조절 - 공격IP·탐지정책 등 정보를 교육부(ECSC)와 공유하여 보안장비에서 차단 실시 ○ 사고조사 및 피해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입을시 해당시스템 격리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 피해 입을시 복구 및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입은 목록 작성 후 국가정보원(NCSC), 교육부(ECSC) 통보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결과 종합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조치결과를 교육부(ECSC) 통보

5.4 심각단계

구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전체에 '심각'경보 전파 ○ 전 교직원에게 피해 사고 확인 ○ 학내 전 교직원에게 심각단계 관련 침해사고 예방·대응책 작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응반을 가동하여 침해상황관제, 침해사고조사, 긴급복구, 대외협력 역할 수행 및 즉시 피해사항 파악 ○ 학내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즉시 활동·수행 ○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장비(DDoS, 방화벽, TMS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 서버 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 모든 정보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 네트워크에서 보안 취약 PC 완전 단절 실시 -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매뉴얼에 따라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복구 시행 준비 - 기타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자산의 네트워크 단절·전원차단 실시 - 피해 업무용 PC에 대한 사고조사 후 OS재설치 등 복구 실시 - 공격 진원지·경유지 차단 및 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전체의 조치결과를 종합, 교육부(ECSC)에 상황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통보 양식은 「붙임2」 참조 ○ 사고발생 시 관련 사항을 교육부(ECSC)에 사고 내역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신고 양식은 「붙임1」 참조 ○ 교육부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교육사이버안전센터와 협조체제 점검·유지 및 수시 상황 파악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와의 실시간 신고·보고·연락체계 가동 ○ 피해 조치 수행 후 취약점 보안 및 대응책 실행
--	---

6. 긴급대응반 운영

6.1 긴급대응반 구성 및 운영

구 분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자 (정보전산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응반 소집 및 구성 ○ 긴급대응 업무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대응반장 (정보보안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응반 총괄 및 대응팀(원) 구성, 업무분장 ○ 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결과 종합 ○ 교육부 긴급대응반 또는 사고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관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이상 징후 감시 ○ 피해상황 접수 및 초동조치 ○ 국내·외 주요 보안사이트 모니터링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보안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격자 방어 및 접속 차단 ○ 보안 취약 정보자산의 네트워크·전원 차단 ○ 컴퓨터 백신 업데이트 실시 및 샘플채취 ○ 피해분석을 위한 시스템 로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사이버 피해사항 접수 ○ 위기경보 수신 시 학내 전파, 피해예방 매뉴얼 배포 ○ 교육부(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에 상황전파 및 신고

- 1) '주의' 이상의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정보전산원 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정보전산원장은 긴급대응반을 소집·구성한다.
- 2) 구성 시기는 '주의' 이상의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정보전산원장의 승인 시 부터 정보전산원장의 종료 지시 시 또는 '관심' 이하의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까지 구성된다.
- 3) 긴급대응반은 정보전산원장이 책임자가 되고 정보보안팀장이 긴급대응반장이 된다. 긴급대응반장은 위기경보 수준과 침해사고 범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
- 4) 긴급대응반장은 대응팀 팀장·팀원의 업무, 세부 운영사항을 대응팀원과 협의하여 긴급대응반을 운영하여, 긴급대응반 비상연락망을 작성한다.

* 긴급대응반 비상연락망은 「붙임3」 참조

- 5) 대응팀은 매일 1회 '침해사고 대응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긴급대응반장에게 대응팀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긴급대응반장은 매일 1회 긴급대응반 활동내역을 정보전산원장에게 취합하여 보고한다.
- 6) 긴급대응반장은 긴급대응반 활동종료 시 '긴급대응반 종합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산원장에게 보고한다.

6.2 긴급대응반 임무 및 기능

- 1) 홈페이지, 메일 및 SMS 등을 통해 학내에 사이버 위기 정보 발령
- 2) 사이버 피해 예방 매뉴얼을 학내에 제공하고, 피해 예방 업무 수행을 지원
- 3) 사이버 위기 정보 발령 수준에 따른 긴급대응반 대응조치 수행
- 4)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피해 최소화 조치 후 교육 사이버안전센터로 신고
- 5) 피해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증거 확보 및 보존
- 6)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7. 침해사고 처리 및 조사

7.1 침해사고 대응 절차

- 1) 대응팀에서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 즉시 긴급대응반장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침해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학내 메일로 제출한다.
- 2) 자체 기술 인력으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반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기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로그기록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등을 징구한 후에 기술 지원을 받는다.
- 3) 긴급대응반장은 침해사고의 대강을 파악한 후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정보전산원장에게 보고 후 그 사안을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하고 외부기관에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 4) 침해사고에 대한 외부기관 대응은 긴급대응반장이 총괄 수행하고, 세부 기술사항은 대응팀에서 대응·지원한다.
- 5) 사고대응팀은 「7.2 침해사고 기술적 조치사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조치하고 단계별 진행사항을 중간보고하며, 사고분석 완료 후 '침해사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긴급대응반장에게 제출한다.
- 6) 침해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7.2 침해사고 기술적 조치사항

- 1) 침해사고가 발생 시 사고대응팀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 2) 조치 단계는 긴급대응단계, 재발방지단계, 시스템복구단계, 분석 및 보고단계, 재침입 감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3) 긴급대응단계에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1단계: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 확보
 - 나) 2단계: 시스템 동작 프로세스 점검
 - 다) 3단계: 네트워크 점검
 - 라) 4단계: 오픈된 파일에 대한 점검 수행
 - 마) 5단계: 시스템 로그에 대한 점검 수행
 - 바) 6단계: 시스템 설정파일에 대한 점검을 수행
- 4)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추가자료 수집, 사고원인 제거, 백도어 확인 제거 및 사고경로를 확인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7단계: 사고 호스트에 대한 백업 수행
 - 나) 8단계: 변형된 파일의 탐지
 - 다) 9단계: 알려진 백도어 및 루트킷 탐지 및 조사
 - 라) 10단계: 사고 호스트 주변 로그 분석
- 5) 시스템 복구단계에서는 사고 확산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복구한다.
- 6) 분석 및 보고단계에서는 확산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하며,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갱신한다.
- 7) 재침입 감시단계에서는 재침입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8. 준용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이버 위기 대응 세부 수행업무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준용하여 따른다.

침해사고 신고서

기 본 정 보			
기관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부서	정보전산원
성명	홍길동	직위(급)	전산주사
전자우편	hong@kumoh.ac.kr		
연락처	전화: 055-213-0000 H.P:010-0000-0000 Fax: 054-213-0000		
사 고 내 용			
사고일시	년 월 일	피해IP주소	203.246.X.X - 255
	시 분		
피해시스템 용도	사, 아	운영체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윈도우 <input type="checkbox"/> 유닉스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장비 상세버전정보: Windows 10
	* 뒷장의 '가.시스템 분류' 기호 입력		
사고 유형	D	피해범위	대
	* 뒷장의 '나.사고 유형' 기호 입력		* 피해시스템이 여러대인 경우 피해숫자 기입
사고 내용	대학 내 연구실로부터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음		
조 치 내 용			
공격자 정보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는 주로 seoul_ace@state.gov 임		
피해 현황	전쟁사진을 포함한 전자우편 수신 증가, 연구원 내 네트워크 트래픽 급격히 증가, 3개의 연구실 PC 사용 불가		
긴급조치 실시사항	3개의 연구실 네트워크 차단		
관련보안제품 운영현황	v3 사용중		
그 밖에 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없음			
※ 이 양식은 교육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cyber.ecs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Fax 053-714-0752 또는 cert1@ecsc.go.kr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까지 통보 바랍니다.			

가. 시스템 분류 목록

기호	시스템 분류	설 명
가	웹서버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나	전자우편 서버	전자우편 송수신을 위해 운영하는 서버
다	DB/업무서버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라	개발/임시서버	개발 및 운영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 서버
마	통신전송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전송장비 일체
바	보안장비	방화벽, IDS, VPN 및 백신서버 등 정보보안제품 일체
사	개인/업무PC	기관내 사용자의 PC
아	교육/임시PC	교육장 또는 공용 작업을 위해 여러 명이 사용하는 PC
자	기타	위의 시스템 용도에 없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나. 사고 유형 목록

기호	사고 유형	설 명
A	경유지 악용	타 기관으로부터 해킹시도 항의를 받았거나, 시스템 점검 중 해킹흔적 또는 해킹툴이 설치되어 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B	자료훼손 및 유출	내부 시스템의 자료가 변조가 되었거나,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송신된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C	악성코드 감염	기관내의 서버 PC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을 경우
D	홈페이지 변조	기관의 홈페이지가 변조되었을 경우
E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	기관의 홈페이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이상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F	서비스거부공격 피해	불특정 다수의 IP로부터 접속시도 또는 대량 트래픽이 일시에 유입될 경우
G	시스템 파괴	내부 시스템의 자료가 삭제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H	해킹메일	해킹메일 열람 및 해킹메일 내 악성파일 실행의 경우
I	기타	위의 사고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2] 상황통보문 (정보전산원 → ECSC)

상 황 통 보 문

기 관 사 항			
기 관 명		부 서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연 락 처	전화 : H.P: FAX:		
조 치 사 항			
경보수준	관 심		
발 령 일	년 월 일	수 신 일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조치사항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내 사용자에게 대응책을 작성, 배포 ○ 전자우편 서버의 Filter를 적용 ○ 기관내 감염피해 확인 (피해대수 및 감염PC의 IP) 		
조치대상 목록			
조치결과			
특이사항			

※ 제목과 발령일 부분은 경고발령 수준에 따라 해당 경보수준 색으로함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붙임3] 긴급대응반 비상연락망

구성원	상황별 담당자		이 름	연락처
반 장	정보보안팀장		김동현	054-478-7183
보안 관계팀	네트워크 이상 징후 감시 피해상황 접수 및 초동조치 국내·외 주요 보안사이트 모니터링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보안강화		김동현	054-478-7183
사고 대응팀	라우터 및 스위치 취약점 발표	네트워크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DB 프로그램 취약점 발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정희	054-478-7187
	KORUS 프로그램 취 약점 발표	KORUS 관리자	이정희	054-478-7187
	학사정보 프로그램 취약점 발표	학사정보 관리자	황부경	054-478-7199
	이메일 필터링 및 점검필요	이메일 시스템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홈페이지 및 웹서버 사고빈발	홈페이지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특정IP 공격시도 및 탐지이벤트 확인. 정보보안 프로그램 취약점 발표 등	보안시스템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주요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주요 시스템 관리자 백업시스템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홈페이지·PC보안점검	보안시스템 관리자	김동현	054-478-7183
대외 협력팀	학내 사이버 피해사항 접수 위기경보 수신 시 학내 전파, 피해예방 매뉴얼 배포 교육부(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에 상황전파 및 신고		김주화 노현지 김효진	054-478-7199 054-478-7188 054-478-7370
전문 기관	교육사이버안전센터			053-714-0777

보안사고 조치결과 통보서

사 고 내 용	
소 속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 E-mail	
해당시스템 IP	
해당시스템 OS	
사용용도 및 제공 서비스	
사고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	
비 고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기 본 정 보			
기관명		부서	
성명		직급 및 직위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H.P:	Fax:
사 고 내 용			
사고 일시	년 월 일	피해 IP주소	
	시 분		
피해시스템 용도	※ 사고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	피해시스템 정보	운영체제 :
			상세버전 :
사고 유형	※ 사고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	피해범위	OO대 ※ 피해시스템이 여러대인 경우 피해숫자 기입
사고 내용			
조 치 내 용 요 약			
사고원인	※ 자체긴급대응반, 합동조사팀의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요약작성		
피해현황	※ 사고대응 조치전의 피해현황을 요약작성		
사고대응 조치사항	※ 자체 긴급대응반, 복구지원팀의 피해복구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일자·시간대별로 요약작성		
피해복구결과	※ 사고대응 조치현황을 요약작성		
그 밖의 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자세한 사항은 사고원인·피해현황·조치내역·향후개선대책 등을 망라하여 '사 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침해사고 대응활동 보고서

기 본 정 보			
부 서 명		대응팀명	
보 고 자		직급 및 직위	
근 무 자			
연 락 처	전화:	H.P:	Fax:
활 동 내 용			
활동 일시	20 년 월 일		〇〇시 ~ 〇〇시
활동 내용			
기타 동향 보고			
기타 동향보고			
※ 붙임 :			

기본정보[작성]			
1. 시스템 기본정보			
기관 시스템 용도	예: 대표홈페이지, 도서관 등		
OS 종류(버전)	1. 윈도우() 2.리눅스() 3.기타()		
WEB/WAS 종류	작성필요		
2. DB 연계(연계된 경우 작성 필요)			
연계 여부	O, X	DB 솔루션명	작성필요
개인정보 암호화여부	O, X	개인정보 저장여부	O, X
개인정보 항목	이름, 계정,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회원 수	약 1,000명		
3. 해당 서버와 연계된 보안장비(IPS,IDS,WAF,FW 등)			
연계된 보안장비 목록	예: IPS,IDS,WAF,FW 등 ※ FW 의 경우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된 포트 번호(22, 80, 443, 8080 등) 작성		
4. 다수 도메인 서버			
다수 도메인 서버 여부	O, X		
피해IP에서 서비스 중이 도메인 목록	1. www.서비스명.ac.kr		
로그 정보 (별도 압축파일로 회신)			
1. 로그 수집			
1) WEB/WAS 로그 - WEB Access log (HTTP / HTTPS(SSL) 모두), Error log - WAS Access log (HTTP / HTTPS(SSL) 모두), Error log, Server log			
2) 방화벽 로그			
3) 보안장비(IPS / IDS / WAF (웹 방화벽)) 로그 - 보안장비에서 출발지/목적지 IP로 발생한 이벤트 로그			
2. 시스템 점검도구 실행 결과 채증			
* 암호: ecsc@123407, 점검도구 실행 및 채증 완료 후 반드시 삭제			
Linux 일 경우, 점검도구 (Tools_linux실행방법)			
1) Tools_linux.zip 압축해제			
2) root 권한(!)으로 서버 로그인			
3) Tools_linux.sh 스크립트를 서버에 업로드			
4) 'chmod 744 Tools_linux.sh' 실행 (파일 실행 권한 부여 명령)			
5) root 권한으로 스크립트 파일 실행			
6) 실행 완료 후, /logs_ 폴더 압축			
7) logs_.tar 파일 전송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협조부서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② 사회 재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정택	054-478-7138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이상헌	054-478-7093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임기덕	054-478-7040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정택	054-478-7138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③ 연구실 사고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우동근	054-478-7134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3. 감염병 확산	① 호흡기 감염병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이서현	054-478-7911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협조부서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4.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주무관	임기덕	054-478-7040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협조부서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② 성범죄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상담센터)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주관부서
		팀원	학생성공과 (학생상담센터)	주무관	이서현	054-478-7911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장	유기영	054-478-7043	협조부서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이다솔	054-478-7140	
		팀장	시설안전과	시설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설비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지역협력단	팀장	이재열	054-478-7240	
		팀장	총무과	재산관리팀장	진기정	054-478-7125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팀장	공중중합실센터	팀장	이상현	054-478-7218	
	② 중대 재해	팀장	시설안전과	안전팀장	박일룡	054-478-7136	주관부서
		팀원	시설안전과	주무관	윤찬중	054-478-7148	
		팀장	시설안전과	시설팀장	노정석	054-478-7132	협조부서
		팀장	시설안전과	설비팀장	이인호	054-478-7139	
		팀장	학생성공과	학생복지팀장	한상규	054-478-7047	
		팀장	교무과	학사관리팀장	장준일	054-478-7027	
		팀장	지역협력단	팀장	이재열	054-478-7240	
		팀장	총무과	재산관리팀장	진기정	054-478-7125	
		팀장	생활관	푸름관행정팀장	한수열	054-478-7942	
		팀장	공중중합실센터	팀장	이상현	054-478-7218	
6. 사이버 위기	①	팀장	정보전산원	정보보안팀장	이정희	054-478-7187	주관부서
		팀원	정보전산원	주무관	구승욱	054-478-7185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1	2	1	-	0.8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1	2	1	-	0.8
			계	-	1	2	1	-	0.8
3. 감염병확산	① 호흡기 감염병	감염자 수	-	8	23	1873	86	398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3	0	4	2	1	2.0	
		피해자 수	3	0	4	2	3	2.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1	1	0.4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1	1	0.4
			계	-	-	-	1	1	0.4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사이버	① 사이버 위기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내진 및 벽돌보강	-	-	-	-	
		건물옥상방수	10	10	80	100	
		노후포장개선	-	400	-	400	
		노후 승강기 교체	-	300	900	1,200	
		시설보수	30	50	50	130	
	계	40	760	1,030	1,830		
	② 사회재난	소방시설 점검	28	28	42	98	
		드라이비트 제거사업	607	-	-	607	
		시설보수사업	40	50	50	140	
		석면해체	903	900	-	1,803	
계		1,578	978	92	2,648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	-	-	-		
		계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안전점검 및 인증	40	30	28	98	
		계	40	30	28	98	
	③ 연구실 사고	안전환경 조성사업	141	619	200	960	
		정기안전점검	13	13	13	39	
		안전교육 동영상	8	8	8	24	
		상해보험공제	23	23	23	69	
		건강검진	23	23	23	69	
		안전용품 구입(산단)	147	150	150	447	
계	355	836	417	1,608			
3. 감염병 확산	① 호흡기 감염병	대학혁신사업비	67	-	-	67	
계	67	-	-	67	필요시 예산확보		
4. 범죄	① 일반범죄	-	-	-	-		
	계	-	-	-	-		
② 성범죄	예방교육	4	3	4	11		
	계	4	3	4	1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재해예방	59	59	59	177	
		계	59	59	59	177	
	② 중대재해	중대재해예방	30	20	20	70	
		계	30	20	20	70	
6. 사이버	① 사이버 위기	보안장비운영(보강)	458	471	336	1,265	유지보수비포함
		계	458	471	336	1,265	